

2 총회임원회 보고

제103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총회장 이승희
서 기 김종혁

1. 조 직

- 총 회 장 : 이승희
- 서 기 : 김종혁
- 회록서기 : 진용훈
- 회 계 : 이대봉
- 부 총 회 장 : 김종준 강의창
- 부 서 기 : 정창수
- 부회록서기 : 박재신
- 부 회 계 : 이영구

2. 회 의

1)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12(수) 17:30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서기 김종혁 목사가 총회진행상황을 보고하다.
- ② 서기 김종혁 목사가 긴급동의안 8건 접수현황을 보고하고,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총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서기 김종혁 목사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018년 9월 20일(목) 오전11시, 총회회관 2층에서 있음을 보고하니, 순서는 서기단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2) 제2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13(목) 8: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결의사항

- ① 정기임원회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전10시30분으로 하기로 가결하다.
- ② 서경노회 성석교회에 발급된 소속증명서와 대표자증명서에 대하여는 <제103회기 총회장은 전계현 목사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효력없음'을 통보하는 공문을 시행하기로 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총무에게 맡겨 문서취급 및 발급에 대해 엄중히 관리토록 지시하다.
- ③ 서기 김종혁 목사가 총회본부 문서접수 시행지침(안)을 별지로 보고하니, 본부 기획행정국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제103회 회의록 초안은 회록서기와 부회록서기에게 맡기고, 특별위원 선정은 서기에게 맡겨안을 만들도록 하고 2018년 10월 4일 임원회로 모여 회의록을 채택하고 특별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하다. 특별위원 선정은 총회규칙대로 5인(목사 3명, 장로 2명)을 원칙으로 하고, 재판국원, 감사부원, 선거관리위원, 상비부장, 산하기관 임원은 배제하기로 가결하다.



- ⑤ 회계 이대봉 장로가 총회 가결산 현황을 보고하고, 숙소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회록서기에게 맡겨 확인토록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 일 시 : 2018. 9. 20(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제1차, 제2차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순서를 확인하다.
- ③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을 정하다.
가. 기관장, 상부부장 워크숍 : 2018.10.18.(목) 낮12시, 5층 예배실
나. 신년하례회 : 2019.1.3.(목) 오전11시, 총회회관 2층
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 2019.5.13.~5.15
- ④ 총회산하기관(총회본부, 기독교신문사, 총신대학교, GMS) 직원 단합대회(등반)가 2018년 11월 9일(금)에 있음을 보고받다.
- ⑤ 제102회기 강도사고시 합격자 중 총신대학원 2017년도 2학기 미이수자에 대한 강도사고시 인허 관련 문의가 많아 제103회기 총회 결의사항을 확인하니, “총신신대원 2017년 2학기 미이수자 114명에 대하여는 고시부에 맡겨 총신신대원 2학기 등록을 확인한 후 합격증을 배부토록 하고, 강도사 인허는 노회에 맡겨 2학기 이수를 확인한 후 임시노회를 통해 인허하며, 목사안수는 이들에 한하여 2019년 가을노회에서 안수하는 것으로” 결의하였음을 확인하고, 결의대로 시행하도록 고시부에 통보키로 가결하다.
- ⑥ 제103회 총회에 천서받지 못한 중부노회, 삼산노회, 경기북노회 소속교회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하여는 학교 입시 관련서류와 선교사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에 한하여 용도를 명기한 후 발급토록 가결하다.
- ⑦ 총회 재판국에서 제출한 동대전제일노회의 특별재판국 설치 현의관련 제103회 총회결의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입장의 건은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 ⑧ 성석교회 서류 발급 건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경위서를 제출토록 가결하다.

(4) 제4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4(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경기북노회 송교의 목사 측에서 요청한 노회직인변경 처리에 관한 건과 김성수 목사 측에서 요청한 노회직인변경신청 불허 요청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서광주노회에서 제출한 서광주노회 보고 및 총회행정 전산처리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④ 동대전중앙노회에서 제출한 산정현교회 재판과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지 않도록 회의록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 ⑤ 동대전중앙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재판국 판결에 불복하는 김길태 목사와 동대전제일노회에 대한 징계요청의 건은 동대전제일노회에 제103회 총회에서 채용한 판결 내용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이행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⑥ 중부노회에서 요청한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 요청의 건은 총회결의를 임원회에서 효력정지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고, 박봉규 외 14명의 중부노회 한준택 외 20명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은 절차를 따라 헌의부에 이첩하여 사실하여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⑦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제36회 정기총회 총대파송 요청의 건은 법인이사 2명에 대하여는 서기와 총무가 이사직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해 보도록 하고, 상임회장으로 총회장 이승희 목사를 추대하고, 일반이사 선정은 서기, 회록서기, 회계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⑧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제103회 총회 시 김노아 목사에 대한 결의사항 확인 요청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통보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⑨ 총회장의 국내외 일정과 그에 따른 재정처리에 대한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⑩ 제103회 총회회의록 축조하여 채택하기로 하다.
- ⑪ 제103회 총회회의록 채택 완료하다.
- ⑫ 서경노회에서 요청한 편재영 씨 재심의 건 판결문 발급의 요청의 건은 제103회 총회결의대로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⑬ 총회정책위원회에서 발행하여 제103회 총회 시 배부한 목회매뉴얼 제작비용 처리부분은 총회정책연구위원회가 폐지되었으므로 원고와 판권을 교육출판국에 주어 발행기로 하며, 기 발생한 비용은 교육출판국에서 지급하도록 가결하다.
- ⑭ 제102회기 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업무규정 위반자 처리의 건은 시말서를 받은 것으로 종결하기로 가결하다.
- ⑮ 예산부당 임의집행의 건 처리와 총회본부 직원 급여조정의 건은 서기, 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⑯ 한국교회연합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에서 요청한 <북한나무심기운동 사업> 참여와 후원요청에 대하여 총무에게 맡겨 추진하고, 분담금 2천만원은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⑰ 총회유지재단 정관개정은 유지재단 결의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 ⑱ 수서경찰서에서 박무용 목사의 소송비 지원 내역에 대한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하여는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5) 제5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0. 18(목) 11:2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4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경기북노회 양측의 요청의 건과 추후 제출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경기북노회 수습을 위한 소위원으로 목사 부총회장과 서기를 선임하고 경기북노회 양측을 중재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 ③ 서광주노회에서 요청한 총회행정 및 전산처리의 건과 광주제일노회가 요청한 합병위원회 보고 이후 후속처리에 대한 청원의 건 등은 노회 소속이 중복되는 교회가 공동의회에서 소속노회를 결정한 후 총회로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출(원본대조필)하도록 노회에 공문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제103회 총회 시 임원회에 수입된 안건을 보고 받고 추후 검토기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진연 장로로 선정하고 재판국원 선정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⑤ 제103회 총회 시 개정공포된 헌법을 기독교신문에 공고하기로 가결하다.



- ⑥ 각종 상설위원회의 등의 총회 임원 당연직은 총회장과 서기에 위임하여 축소 조정하고 이에 따른 해위위원회 규정 등의 개정을 해 위원회와 규칙부에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⑦ 영동중앙교회 조병선 장로가 제출한 경평노회 김우겸 씨 외 4명에 대한 상소장은 현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⑧ 제103회 총회 시 채택된 편재영 씨의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문 시행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⑨ 제103회 총회 홍보를 위하여 홍보영상과 브로셔 등을 제작하여 활용하기로 가결하다.
- ⑩ 이형만 목사가 제출한 부서기 불법 당선 무효 이의 제기의 건은 장로임원 3명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⑪ 중부노회 남창욱 외 13명이 제출한 정기노회 소집권자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에 없으므로 “교회정치문답조례” 제807문과 제809문,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의회 규칙> 제2조에 의거 노회장 유고 시 부노회장이, 부노회장 유고 시에는 중경노회장이 소집, 사회토록 하되, 직전노회장부터 역순으로 소집하여 사회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⑫ 중부노회 박희철 목사가 “정직 1년(단, 본 교회 설교는 허용한다)”에 대하여 설교가 허용되었으면 성찬도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선정하여 집례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6) 제6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1. 8(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제5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부서기 관련 건으로 이형만 목사가 제출한 부서기 불법 당선 무효 이의제기의 건과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부서기 박탈 요청의 건은 장로 임원 3인에게 맡겨 사실향인하기로 하고, 이형만 목사가 제출한 부서기 불법에 대한 감사부 청원의 건은 개인이 감사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③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관련으로 김종경 목사가 제출한 제103회 총회 판결에 따른 이행 청원의 건은 해노회에 총회결의대로 이행토록 재지시하기로 하고, 김남기 씨 외 11명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 무효 확인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72867)에 대하여는 해노회에 지시하여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총회결의사항을 근거하여 장로들을 지도하도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④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남울산노회 관련 재판 비용 청구 요청의 건은 남울산노회와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하도록 판결문과 함께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⑤ 경동노회 독도교회 조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중부산노회 원용국 씨와 남평양노회 이병록 씨의 경동노회 소속 독도교회 무단 침입(검거), 불법명의변경 등 행위에 대한 질의 및 진정서는 감사부로 이첩하여 보내 확인케 한 후, 임원회가 그 보고를 받아 검토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⑥ 함경노회에서 요청한 편재영 목사 판결문과 재심 이첩의 건은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⑦ 동대전제일노회에서 보고한 산정현교회 총회 지시사항 처리의 건은 받고, 재판국 4인 고소 취하의 건은 특별재판국으로 보내 종결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⑧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교회 정보변경(임시당회장 파송 등) 처리의 건은 서기단과 총회총무에게 맡겨서 확인 후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⑨ 분쟁중인 노회 소속교회의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건으로 경기북노회는 양측에서 서류 발급을 합의하였으므로 발급하도록 하고, 중부노회는 가을 노회 후 그 결과를 따라 발급토록 하며, 삼산노회는 현 전산등록 교회에 한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⑩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광주제일노회 중북교회의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제출현황을 보고 받고, 전남제일노회와 광주제일노회는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원본대조필)을 제출하였으므로 그대로 처리하고, 서광주노회가 제출한 임원회 불법 결의 의의서 및 감사처리 요청의 건은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⑪ 삼산노회 도수열 목사가 제출한 직인사용 허락 요청의 건과 삼산노회 현황보고의 건과 노회 상황보고의 건은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⑫ 사회복지재단에서 요청한 임기만료 이사에 대한 교체이사 추천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⑬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제2회기분 회비 선납입 요청의 건은 회계와 총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⑭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인도네시아 지진 쓰나미 이재민 구호 및 연말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요청의 건은 구제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⑮ 직전 교정선교위원회 위원장 윤종오 목사가 요청한 지난 회기 교정선교위원회 선교비 잔액 인계 요청의 건은 회계부에 넘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⑯ 총회본부 증명발급 및 문서발송 시행지침안에 대하여는 서기, 회록서기에게 맡겨 검토후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⑰ 대구노회 박해근 씨 외 2명이 제출한 대구노회 서성현 씨에 대한 소원의 건은 현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⑱ 경기북노회 송교의 목사 측에서 보내온 직인변경 처리에 관한 내용증명의 건은 해당 소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⑲ 김정훈 목사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취하의 건은 총회관련 소송 검토 위원으로 서기, 회계, 회록서기에게 맡겨 재판관련 일체를 맡겨 사실하도록 하고, 본 건도 이첩토록 가결하다.
- ⑳ 3.1운동 준비팀 구성을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㉑ 서인천노회 소속 목사 성추문 사건에 대하여 교단과 한국교회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신속, 엄중하게 대처하기로 하고, 총회장과 임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며, 해교회 당회장은 총회 내 모든 활동과 공직을 제한하기로 하고 해노회에 ㉒ 해당교회 담임목사와 당사자가 사과입장을 표명토록 할 것과 ㉓ 피해자에게 사과토록 할 것과 ㉔ 권징조례(제1장 제3조, 제6장 제38조, 제6장 제42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㉒ 총회장의 희망행보 실행의 건으로 4가지 희망행보인 화해행보(분쟁노회), 통일행보, 섬김행보(낙후지역), 회복행보(충신대학교)를 적극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7) 제7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2. 5(수) 11:00

☎ 장 소 : 팔래스호텔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제56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장소가 광주겨자씨교회로 확정되었음을 보고하다.
- ③ 제103회 총회시 어린이세례 헌법 신설에 따른 세부지침과 문답자료를 서기와 회록서기, 기획



행정국장과 김한성 목사에게 맡겨 간단한 문답서를 준비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④ 서광주노회가 제출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전산처리)을 위한 감사요청의 건과 총회임원회의 제103회 총회 결의 불이행 감사요청의 건은 총회 결의사항을 보완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 ⑤ 남평양노회에서 제출한 엄수봉 목사와 울릉양문교회 조사에 대한 소원서 송부의 건은 6차 임원회의 시 경동노회 독도교회 조사처리위원회의 진정서를 감사부에 이첩하였으므로 동일하게 감사부에서 병합하여 다루도록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⑥ 중부노회 박봉규 목사 외 13명이 제출한 재심청구서와 최규식 목사가 제출한 중부노회 임원 조직 보고 및 직인변경보고에 대하여는 소위원으로 목사 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를 정하고, 맡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⑦ 특별재판국에서 동대전제일노회의 재판국 4인 고소 취하의 건을 총회임원회로 반송한 건은 현의부로 이첩하되, 특별재판국으로 즉시 이첩토록 단서를 달아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⑧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청원한 제103회 총회 리셉션 비용 청원의 건은 제103회기 위원회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고, WRF 분담금 1만달러 지원의 건은 연합기관분담금에서 지급키로 하고, WRF 교단파송이사로 총회장과 위원장을 파송해 줄 것을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⑨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제103회기 총회역사관 관장 및 부관장 인준 요청의 건은 허락하되, 제103회 총회 정신에 따라 위원장과 관장이 중복되는 것은 서기에게 맡겨 조정하도록 가결하다.
- ⑩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서 요청한 위원회 임무와 권한에 대한 지침 질의와 재정지원 요청의 건은 제103회 총회결의대로 전체 노회의 21당회 여부를 실사토록 하되, 전권은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조사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정청원은 추후 상황에 따라 추경 청원토록 가결하다.
- ⑪ 성석교회와 관련하여 함경노회에서 제출한 강재식 씨 조사 처벌의 건과 성석교회 불법서류 발급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은 감사부로 보내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고, 성석교회가 서경노회 소속이라는 소속증명서 발급증지 청원의 건은 일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⑫ 총회 감사요청의 건으로 목포서노회에서 제출한 광주중앙교회와 전남제일노회 합병 적법성 감사 청원의 건과 영광대교회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 현의토록 반려하기로 하고,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전남노회 제103회 총회총대 불법선거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의 건은 절차상 개인이 감사요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⑬ 제103회 총회 시 기독교신문이 재정청원한 건을 재정부에서 총회임원회로 이첩한 건은 다시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고, 개혁교단과 합병 시 약속한 3억원 집행과 임대료 면제 요청의 건은 총회결의가 없는 사항이므로 불가한 것으로 하고, 필요 시 제104회 총회 시 청원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⑭ 서평양노회 예수로교회 김경호 씨 외 1인이 제출한 서평양노회 김성곤, 장영진 씨에 대한 소원의 건과 노회에서 보내온 입장을 확인한 바, 노회로 보내어 잘 지도토록 가결하다.
- ⑮ 사랑의교회 강태우 씨가 제출한 동서울노회 오정현 씨에 대한 상소(일반)의 건은 현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⑯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요청한 대표회장 추천의 요청의 건은 추천을 허락하기로 하고 발전기금 2천만원을 납입하기로 가결하다.
- ⑰ 삼산노회 정부근 목사가 제출한 노회업무 방해 사실 감사 청원의 건은 제6차 임원회의 시 도

수월 목사 측의 제출 서류도 반려하였고, 삼산노회는 제103회 총회 시 천서되지 않아 현재 청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⑮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2018카합 21531) 소송 대응을 당사자에게 위임하였음을 보고하니 추인하고, 본안 소송(2018가합 572867)도 비용 일체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당사자(김중경 목사)에게 위임하여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⑯ 재판국에서 요청한 김영범 목사의 사임에 따른 보선 요청의 건은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⑰ 총회인준신학교 출신자 총회신학원 입학에 대한 해 위원회의 건의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 ⑱ 서인천노회 소속목사 성추문 사건에 대한 서인천노회의 처리 보고는 보고로 받고, KBS 1TV 추적60분 팀에서 질의한 내용과 인터뷰 요청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⑳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재심청원서는 제103회 총회 시 기각된 건이므로 동일회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고, 특별감사 청원의 건은 절차상 개인이 감사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㉑ 제6차 회의 시 윤익세 목사의 남울산노회 사회소송 재판비용 지급요청에 대하여 남울산노회의 답변서를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해결토록 총회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㉒ 충남노회 박노섭 목사 외 31인이 청원한 임시당회장 변경 반려 및 총회헌법(결의) 위반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소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㉓ 2018년도 성탄헌금 총신보내기 운동에 전 총회임원들이 동참하기로 가결하다.

(8) 제8차 임원회

☞ 일 시 : 2018. 12. 20(목) 13:1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부서기 관련 소위원회 서기가 사실확인 내용을 구두보고 하니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가결하다.
- ③ 사회소송 관련 변호사 자문료 청구의 건은 회계부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④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준비 소위원회에서 청원한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과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실행위원회 안건 상정 청원의 건은 “총회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본교단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를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기념사업으로 3.1운동 참여교회 조사, 사적지 선정, 유공자 발굴 및 선정의 건을 총회실행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 ⑤ 중전주노회에서 제출한 전주동부교회 관련 총회임원회 지도에 대한 회신의 건은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 ⑥ 한남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질의의 건과 동평양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인준 지방신학교(칼빈신학교)의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⑦ 서광주노회에서 제출한 총회임원회의 제103회 총회 결의 불이행 감사처리 요청의 건과 제103



회 총회결의대로 이행 요청에 건에 대하여는 제6차, 제7차 임원회에서 반려하였던 건이므로 반려하기로 하고, 담양중앙교회에 대하여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제출토록 가결하다.

- ⑧ 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임원(이사) 결원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⑨ 총회목회대학원에서 청원한 편목교육 실시 청원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 ⑩ 총회실행위원회를 2019년 1월 3일(목) 오후1시30분, 총회회관 2층에서 갖기로 하다.

(9) 제9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 3(목) 10:2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제7차 임원회 결의에 의거 WRF 분담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WRF 국제이사 다비 고메즈 박사, 의장 로버트 노리스 박사, 사무총장 사무엘 로간 박사의 감사 서신이 도착하였음을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함경노회에서 청원한 제50회 총회결의대로 노회에 임시로 가입한 편목의 특별교육 시행 청원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 ④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회에 제출한 문서 답변 요청의 건은 이미 답변한 사항이므로 서기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⑤ 중부노회에서 질의한 노회 화합을 위해 제103회 총회에서 정직판결된 자들의 해벌 방법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⑥ 부산노회에서 요청한 부산지방법원에 신평로교회 교단탈퇴 무효 탄원서 제출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 전원이 연서하여 제출하기로 가결하다.
- ⑦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평신도위원회,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 서기, 총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⑧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한기총 복귀 요청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10) 제10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 18(금) 13:00

☞ 장 소 : 반야월교회 당회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서기가 제1차 실행위원회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③ 평양노회에서 제출한 평양노회 총대 강재식 목사의 진정서에 대하여는 감사부에서 조사중이므로 보고로만 받기로 가결하다.
- ④ 한성노회에서 제출한 교회 및 목사회원 정리의 건과 법무법인 린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한성노회장 및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증명서 발급금지 요청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⑤ 서기가 문찬수, 광효근, 김남웅, 하귀호, 박재선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지시 등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0813)이 <각하>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⑥ 전주동부교회 관련 건으로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장로 외 11인이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항고(2019라20003) 대응의 건과 중전주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결

의 관련한 재판진행에 대한 건의의 건을 심의하니 가처분 건은 당사자인 김중경 목사에게 위임하여 <각하> 결정이 났으나 김중경 목사가 교단을 탈퇴하였으므로 항고 건을 총무에게 맡겨 총회가 직접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⑦ 이형만 목사가 제출한 제103회 총회 부서기 당선자 관련 불법 감사부 조사로 당선무효 청원의 건은 6차 회의 시 개인이 감사청원 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였고, 감사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내용을 넣어 재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⑧ 조재일 목사가 제출한 새순천노회 불법에 대한 감사의뢰 및 해산 지시 청원의 건은 개인이 감사 청원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⑨ 제103회 총회 수입사항 건으로
- 가. 총회장상 포상은 부회록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준비토록 하고,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시 시상하기로 가결하다.
- 나. 총회주일용, 이단경계주일용, 전도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의 건은, 총회홍보용 동영상은 제작완료하여 총회홈페이지에 올렸음을 보고하니, 이단경계주일용 동영상은 이단대책위원회에, 전도용 동영상은 전도부에 맡겨 제작토록 하되 총무의 감독하에 진행하도록 가결하다.
- 다. 종교인 과세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대하여는 교회생태계특별위원회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라. 각 부서의 재정 추경청원은 총회임원회 결의를 통해 재정부가 처리토록 결의한 건은 기관장, 상비부장 워크샵(2018.10.18.) 시 공지하였던 바, 재정부에 다시 한 번 공문을 시행토록 가결하다.
- 마. 정치부 조직 개편 시행을 위한 규칙 개정에 대하여 규칙부에 규칙을 개정하여 보고토록 지시하였으나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재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⑩ 제1차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사항 시행 건으로
- 가.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건은 목사부총회장과 총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나. 지방신학교 졸업자 및 편목 교육 시행의 건은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다. 서기가 경목부, 군목부, 학생지도부 명칭 변경과 교정선교부 등 신설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토록 지시하였음을 보고하니, 필요한 상비부가 있으면 추가로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⑪ 차기 회의는 1월 25일(금) 오후1시40분, 총신대학교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11) 제11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 25(금) 14:30

☎ 장 소 : 사당총신대학교 종합관 제1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경남노회에서 제출한 시무목사의 위임목사 청빙 관련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③ 법무법인로드에서 청구한 박노섭, 이상규 목사가 항소한 2017나2060308 총회결의무효확인인 소(서울고법) 소송비용 청구의 건은 회계와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④ 재정청원의 건으로 ㉠ 칼빈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청원 및 예산청원의 건과 ㉡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재정청원의 건과 ㉢ 교회실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추경청원의 건과 ㉣ 군목부에서 제출한 재정청원의 건과 ㉤ 면려부에서 제출한 사업비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맡겨 사실 하여 보고토록 하다.



- ⑤ 총회임원들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당할 경우 총회가 재정을 지원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되, 임기가 끝난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토록 가결하다.
- ⑥ 총회직원에 대하여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소 당할 경우 총회가 재정을 지원하여 적극 대응토록 가결하다.

(12) 제12차 임원회

☎ 일 시 : 2019. 1. 29(화) 16:00

☎ 장 소 : 인천공항

☎ 결의사항

- ① 총신운영이사회의 청원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 ②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온청군 양묘장 지원 사업을 총회가 하기로 하고, 조그련과 3.1운동 백주년 기념 평화기도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의논하기로 하다.
- ③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추경청원은 회계부에서 살펴보고 임원회로 보고토록 가결하다.

(13) 제13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6(수) 17:00

☎ 장 소 : 선교지

☎ 결의사항

- ① 편목과정, 칼신·대신·광신 신대원 졸업자 교육,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 등에 대해 토의한 결과 편목과정과 총회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 교육에 대한 건은 법적 검토를 거쳐 총회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칼신·대신·광신 신대원 졸업자 3주 교육의 건은 총신 운영이사회에 위탁하여 진행토록 가결하다.

(14) 제1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7(목) 20:00

☎ 장 소 : 선교지

☎ 결의사항

- ① 총신 운영이사회의 청원 건은 추후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 ② 회계부에서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의 사업비로 1,900만원을 배정하기로 함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15) 제15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12(화) 13:00

☎ 장 소 : 총신대 양지캠퍼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제11차, 제12차, 제13차, 제14차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총회신학원 관련의 건으로
 - 가. 총회신학원 운영위원은 총회임원과 총신운영이사회 임원으로 구성하기로 하다.
 - 나. 총회신학원 원장은 총회장으로 하기로 하다.
 - 다. 법적 허가의 건은 총무와 기획행정국장에게 맡겨 진행토록 하다.

- 라. 총회신학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2019년 2월 14일(목) 오후1시, 총회회관에서 갖기로 하다.
- ③ 제56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준비를 준비위원장인 서기와 회록서기에게 맡기되 총회장과 상의 하여 준비토록 하고, 아침과 저녁 휴식시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다.
 - ④ 교회사역자 자기관리 세미나 예산을 보고하니 허락하기로 하다.
 - ⑤ 빌리그래함 재단에서 임원과 직원 20명 식사 접대 요청을 수락하기로 하다.

(16) 제16차 임원회

☞ 일 시 : 2019. 2. 24(주일) 17:30

☞ 장 소 : 서대문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총회신학원 편목교육 업무를 위하여 기획행정국 직원 1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회의비, 강의비 지급 등은 회계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하다.

(17) 제17차 임원회

☞ 일 시 : 2019. 3. 7(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제15차, 제16차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임원회 수입사항 처리의 건으로
 - 가. 부회록서기 박재신 목사가 총회장상 시행 계획안을 보고하니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470만원을 배정토록 가결하다.
 - 나. 서기 김종혁 목사가 제102회 총회 결의(유아세례연구위원회 보고, 보고서 p.925~926) 및 제103회 총회결의(헌법개정)에 의거 어린이세례 헌법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답집 및 시행지침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총회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함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예산 900만원을 배정토록 가결하다.
 - 다.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목회자 자기관리 세미나 시행의 건을 보고하니 명칭을 “교회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예산 1,000만원을 배정토록 가결하다.
- ③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요청한 총회 상설기구로 전환 요청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 현의 하도록 답변키로 하다.
- ④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역대 총회회의록 복사 및 전자문서(PDF) 제작 협조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⑤ 특별재판국에서 요청한 국원 보결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서기와 총무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로 가결하다.
- ⑥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에서 요청한 추경 청원과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요청한 추경 청원은 정·부회계에게 맡겨 검토하여 임원회에 보고토록 하다.
- ⑦ 총신 운영이사회에서 요청한 ㉠ 제102회기 중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의거 총신운영이사회에서 시행한 “목회준비세미나” 관련 업무방해 피고발 건 대응에 대한 제반비용 총회 부담 요청의 건은 이번 건에 한하여 변호사선임 비용만 총회가 부담하도록 하되, 대응은 총신운영이사회에서 하도록 하고, ㉡ 2018년도 지방신대원 졸업자 3주 특별과정 수료자 증명서 및 졸업증 발급을 총회로 이관하여 총회가 발급토록 요청한 건은 좀 더 논의를 거친 후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⑧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에서 요청한 총신대학교 재정현황에 따른 기부 검토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⑨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요청한 경기북노회 소송(2018카합5386 명칭등 사용금지 가처분) 관련 사실조치요청의 건은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⑩ 예수로교회 김성길, 김경호 장로가 요청한 소원장을 총회임원회에서 서평양노회로 이첩 지도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공정한 재판 요구의 건은 소원장을 현의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⑪ 신선호 장로가 제출한 중서울노회의 총회결의 도전과 이단방조 의혹 진정의 건은 개인이 감사를 청원할 수 없으므로 해 노회로 이첩하여 잘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⑫ 조재일 목사가 제출한 새순천노회 이형근 씨에 대한 고소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고, 새순천노회 이형근 씨에 대한 감사의회의 건은 개인이 감사를 청원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⑬ 이승만 장로가 제출한 질의서와 재심요청서는 해 노회로 이첩하여 잘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⑭ 함경노회 남춘우 목사가 제출한 서경노회 재판 건에 대한 치리회간 소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⑮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요청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에 따른 후원요청의 건은 1,500만원을 후원하기로 가결하다.
- ⑯ 개혁총회 박창덕 목사가 제출한 아름다운교회(중부산노회에서 탈퇴)에 대한 탄원서는 총무에게 맡겨 살펴서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 ⑰ 회계 이대봉 장로가 총신대 재단이사회 관련 소송(2017가합548041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성공보수금을 5,5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을 보고하니 지급하기로 가결하다.
- ⑱ 전주동부교회에서 요청한 총회판결무효확인소(서울지법 2018가합572867)에 대하여 총회가 대응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한 건은 제10차 임원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⑲ 일본동맹기독교단 제70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3회 총회,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제43회 총회 초청의 건은 방문하기로 하고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⑳ 총회신학원 운영을 위한 유지재단 정관개정 사항은 유지재단 이사회 개정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 ㉑ 서인천노회 인천새소망교회(김영남 목사)에 대하여는 서인천노회에 조치토록 지시하였으나 보고가 없는 바, 우선 전산에서 삭제기로 가결하다.
- ㉒ 북한나무심기 지원 부분은 총회임원회와 통일준비위원회가 함께 실행하기로 가결하다.
- ㉓ 제11차 임원회의시 회계부에게 사실 확인하도록 한 추경청원 건(갈빈기념사업위원회 예산청원, 이단대책위원회 재정청원, 교회실사처리위원회 추경청원, 군목부 재정청원, 먼려부 사업비 청원)은 회계 이대봉 장로의 안대로 추인하기로 가결하다.

(18) 제18차 임원회

☎ 일 시 : 2019. 4. 4(목) 16:00

☎ 장 소 : 제주 메종글래드호텔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뉴질랜드노회에서 청원한 총회총대 자격 완화 청원의 건과 총회총대 여비 재정 청원의 건은 현의부로 넘기기로 가결하다.
- ③ 서광주노회에서 청원한 전남제일노회 소속교회와 목사를 서광주노회로 소속 변경 청원의 건은 서기로 하여금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장에게 확인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④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통일준비 사역 및 통일준비기금 사용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⑤ 농어촌부에서 요청한 추경 청원과 총회역사위원회에서 요청한 추경 청원은 회계부에 맡겨 검토하여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⑥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1인이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 소(서울지법 2018가합 572867)는 제7차 회의 시 당사자인 김중경 목사로 대응토록 위임하였으나, 이후 교단을 탈퇴 하였으므로 총회가 직접 대응키로 하고, 총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제104회 총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 ⑦ 중부노회 박봉규 씨 8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고(서울고법 2019라20353)의 건은 당사자(최규식 측)에게 위임하여 대응키로 가결하다.
- ⑧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에서 요청한 2019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및 교단 분담금 등 협조 요청의 건은 분담금(2천만원)을 보내기로 하고, 성도 동원은 총무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⑨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요청한 제36회기 회비 납부 요청의 건은 납부하기로 가결하다.
- ⑩ 한국교회총연합회에서 요청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반대를 위한 캠페인 홍보 및 전국교회 서명운동 요청의 건은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전국교회에 공문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⑪ 총회회관 2층 여전도회 임대관련의 건은 총무, 회계, 부회계에게 맡겨 제반 관련서류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⑫ 제17차 임원회의시 회계부에게 사실 확인하도록 한 추경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하니 반기독교 세력대응위원회의 추경 청원은 제104회 총회에서 상설위원회로 허락 시 예산청원토록 하고,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의 추경 청원은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 ⑬ 편목과정 총신 기수는 서기에게 맡겨 총신 기수를 확인하여 기수를 부여하도록 가결하다.
- ⑭ 구조조정 후속처리 소위원회 보고로 한승남 직원의 명퇴수당 중 반액을 환수하는 것과 직원의 은급기금의 총회 지원액 중 반액을 환수하는 건을 보고하니 소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9) 제19차 임원회

☞ 일 시 : 2019. 4. 24(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용인노회에서 질의한 미조직교회와 조직교회의 임시당회장에 관한 질의는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③ 대구노회에서 요청한 대구동노회 소속 총회 총대권 중지 요청의 건은 천서위원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④ 중부노회에서 요청한 노회 증명서류 발급요청의 건은 보류토록 하고, 소위원회에 맡겨 양측에 상황을 설명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⑤ 함경노회에서 요청한 서경노회에 발급한 총회결의사항 확인 취소 및 제103회 총회감사부 보고에 대한 총회결의사항 발급 요청의 건은 서경노회에 발급해 준 것은 총회결의대로 발급해 준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고, 감사부 보고에 대해서도 총회결의대로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 ⑥ 대구노회 박해근 씨가 제출한 서현교회 박배근 씨 외 8명에 대한 상소장과 대구노회에서 제출



한 박혜근 목사 상소 접수 확인 통지의 건을 검토하니, 박혜근 씨가 제출한 상소장은 부전 부적격으로 반려하고 해 노회에는 이 사실을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 ⑦ 총신대학교에서 제출한 총회인준 지방신대원 졸업자 특별세미나 진행관련 지시에 대한 답변은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⑧ 재정청원 건으로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재정 추경 청원의 건과 재정부에서 제출한 회의 비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맡겨 검토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⑨ 분쟁 중인 노회가 기독교신문에 광고를 신청할 시 서기, 총무와 협의하도록 기독교신문에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⑩ 제104회 총회 장소를 충현교회(한규삼 목사 시무)로 결정하고, 총회준비위원을 목사부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선정하기로 가결하다.
- ⑪ 제18차 임원회의시 회계부에게 사실 확인하도록 한 추경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하니 ㉗ 농어촌부 추경 청원은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㉘ 총회역사위원회 추경청원은 3.1운동 기념세미나 500만원은 추경해 주기로 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총회 시 예산을 배정받도록 하되 중첩되는 사업은 지양하도록 공문을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⑫ 총회장상 시상자 추천현황을 보고받고, 서기단에 맡겨 총회장상 시상자를 선정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20) 제20차 임원회

☞ 일 시 : 2019. 5. 13(월) 14:00

☞ 장 소 : 광주겨자씨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목사장로기도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헌금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사용하기로 가결하다.
- ③ 중부노회 소위원회가 경과를 보고하니, 소위원회가 양측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중재 및 처리를 하도록 가결하다.
- ④ 순천노회에서 질의한 노회 총대와 장로 시무 자격정지에 관한 질의의 건은 목사부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⑤ 충남노회에서 요청한 32개 교회의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의 건은 허락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⑥ 재정청원 건으로 교단연합교류위원회에서 제출한 추경 청원의 건과 전도부에서 제출한 동영상 제작비용 추경의 건과 면려부에서 제출한 전국청장년면려회 재정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맡겨 검토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⑦ 성석교회 관련 건으로 ㉗ 편재영 목사가 제출한 서경노회 신하철 외 1명에 대한 소원장은 사건을 심리 중인 권징조례 제23조에 의거 노회 재판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반려하기로 하고 ㉘ 17차 회의 유안건으로 함경노회 남춘우 목사가 제출한 서경노회 재판 건에 대한 치리회간 소원장은 제103회 총회결의에 따라 노회에서 재판 중이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⑧ 17차 회의 유안건으로 조재일 목사가 제출한 새순천노회 이형근 씨에 대한 고소장은 재판국에서 조재일 목사의 상소 건을 다루고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⑨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1인이 항고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항고(서울고법 2019라 200003)건이 “기각” 되었음을 보고하니 보고로 받다.

- ⑩ 제19차 임원회의시 회계부에게 사실 확인하도록 한 추경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하니 ㉞ 이단 대책위원회는 15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500만원을 추경해 주기로 하고 ㉜ 재정부 회의비는 500만원을 추경해 주도록 보고하니 회계 보고안대로 처리기로 가결하다.
- ⑪ 기획행정국장이 전국 교회 및 노회에 발송된 한글과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준수 확인 및 정품화 협조 요청의 건 대응을 위하여 한글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및 정품프로그램 안내 추진 계획을 보고하니 추진토록 가결하다.
- ⑫ 대구노회 박혜근 씨가 보완하여 제출한 서현교회 박배근 씨 외 8명에 대한 상소장은 상소장을 노회가 접수하였으므로 반려하고, 대구노회에는 상소자의 상소요청대로 총회규칙에 의거 처리토록 지시하기로 하고, 박혜근 목사에게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21) 제21차 임원회

☞ 일 시 : 2019. 6. 7(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경일노회에서 제출한 총신신대원 외국인 졸업자에 대하여 영어로 강도사고시를 볼 수 있도록 청원한 건은 제104회 총회로 현의토록 경일노회에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 ③ 대구노회에서 제출한 박혜근 목사 상소장 관련 제20차 총회임원회 결의에 대한 질의의 건과 노회에서 총회 지시대로 상소장을 총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부전하여 다시 제출한 박혜근 목사의 상소장에 대하여 논의하니 대구노회에는 제94회 총회결의사항과 총회 규칙에 의거 박혜근목사의 상소장을 6월 24일까지 총회본부로 제출토록 지시하되, 불이행시 박혜근 목사가 제출한 상소장을 서기가 현의부에 이첩토록 할 것임을 통보하기로 하고, 박혜근 목사에게 상기의 내용을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 ④ 전남제일노회에서 요청한 소속교회 전산처리 축구의 건은 천서위원회가 조정 중에 있으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⑤ 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⑥ 총회신학원 운영을 위한 유지재단 정관 추가 개정 사항은 유지재단 이사회 개정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다.
- ⑦ 경상노회 박철수 목사가 질의한 경상노회 제190회 정기회 결의에 대한 질의의 건은 해 노회로 이첩하여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⑧ 편재영 목사가 제출한 소원장 반려에 대한 감사요청의 건은 개인이 감사요청할 수 없으므로 반려하고, 서경노회 신하철 외 1인에 대한 소원장은 제20차 회의 시 반려한 동일 건이므로 재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⑨ 구제부에서 청원한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맡겨 검토 후 차기 임원회에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⑩ 김화경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9카합125,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은 총회결의에 따라 총회에서 적극 대응키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건에 대하여도 강력히 대응키로 가결하다.
- ⑪ 성석교회의 화해 수습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장로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태구 목사와 최병철 장로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되,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어 필요 시 위



원을 교체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가결하다.

- ⑫ 제19차 임원회의시 회계단에게 사실 확인하도록 한 추경 청원 건에 대하여 보고하니 교단연합 교류위원회와 전도부는 각각 500만원을 추경해 주고, 면려부는 기 배정된 예산내에서 시행되었어야 하므로 기각할 것을 보고하니 보고안대로 처리기로 가결하다.
- ⑬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외 11인이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의 소(2018가합572867, 서울중앙지방법원)가 원고측에서 “소취하”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⑭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항고(2019도2856, 대법원)건이 “상고 기각” 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⑮ 정삼지 목사가 상고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2019다209956, 대법원)가 “상고 기각” 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 ⑯ 제56회 목사장로기도회 현금 사용처 지정의 건은 회계부와 총무에게 맡겨 선정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집행토록 가결하다.
- ⑰ 교육부 인가 총회신학원 산하 평생교육원 형태를 학교형 형태에서 지식인력개발 형태로 바꾸어 추진기로 가결하다.
- ⑱ 김용제 목사 측에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의 심문기일이 6월 11일이므로 소송대응을 위하여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 측에 위임장과 노회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가결하다.

(22) 제22차 임원회

☞ 일 시 : 2019. 7. 4(목) 13:00

☞ 장 소 : 한국칼빈주의연구원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수정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요청한 제104회 총회에 초청할 해외교단 선정 및 해외교단 대표단 의전 및 리셉션 주관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초청교단 최종 선정은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검토 후 선정하도록 가결하다.
- ③ 서광주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결의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과 제103회 총회결의 시행지체에 대한 감사 청원의 건과 노회간의 교회 불법 이명 이적 감사 청원의 건은 서기, 부서기, 총무에게 맡겼으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④ 한성노회 관련 건으로, 김성경 목사 외 1인이 제출한 소속증명 발급에 대한 진정의 건과 김성경 목사가 제출한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에 대한 고소장과 한성노회에서 제출한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에 대한 사회법정 결정 보고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니 목양교회 양측에 교회 재산을 총회 유지재단에 가입시키겠다는 양측 회의록, 또는 서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토록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 ⑤ 서울북노회에서 제출한 군선교사의 결의권에 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법대로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⑥ 김제노회 정인수 장로가 제출한 질의의 건은 노회에서 답변토록 해 노회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⑦ 서울노회 황산규 장로가 제출한 진정서는 노회에서 처리토록 해 노회에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 ⑧ 서중노회 김남호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구의 건은 노회에서 처리토록 해 노회에 이첩하였으나 노회에서 다루지 않아 다시 제출하였으므로 현의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⑨ 순천선평교회 신도회 회장이 제출한 삼산노회(이봉철 목사 측) 고발의 건은 절차미비로 반려하

기로 가결하다.

- ⑩ 재정청원 건으로 교육부가 청원한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재정 추경 청원의 건과 교회실사처리위원회의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과 노회록검사부의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과 신학부의 재정 추경 청원의 건과 총회역사위원회의 추경 청원 협조 요청의 건과 21차 회의시 회계부에 검토토록 한 구제부 회의부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일임하여 검토토록 하고 총회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⑪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에서 요청한 전태식 목사에 대한 참여금지 해제 요청의 건은 이단대책 위원회로 이첩기로 가결하다.
- ⑫ 공천위원회 일정 및 장소 선정의 건은 서기단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 ⑬ 윤익세 목사가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상대로 신청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의 건(2019카합 20885,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례에 따라 적극 대응하되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기로 가결하다.
- ⑭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한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제103회 총회총대 자격 불법(무효)에 관한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조사처리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원선정은 서기단에 맡기기로 하다. (윤익세 목사가 총회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윤익세 목사의 총회총대 자격에 대해 문제제기가 들어왔으므로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분쟁중인 노회에 준하여 충남노회 관련 주요 서류는 발급을 보류하기로 하다.)
- ⑮ 경상노회 이보길 목사 외 30명이 제출한 소원장과 이보길 목사가 제출한 상소장 및 장로임직 및 불법당회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단에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⑯ 산서노회에서 제출한 허활민 씨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을 논의하니, 서기단에 맡겨 처리안을 보고토록 하다.
- ⑰ 서기단에서 “허활민 씨에 대한 재심청구의 건은 제104회 총회로 제출토록”보고하니 그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 ⑱ 이능규 목사가 제출한 재심신청서는 제104회 총회 안건으로 처리토록 현의부에 보내기로 하고, 이성열 목사가 제출한 산서노회 천서제한 요청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고, 이성열 목사가 제출한 산서노회 분립 청원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23) 제23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1(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자구 수정하여 반기로 가결하다.
- ② 새순천노회 산수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조재일 목사가 제출한 산수제일교회 임시당회장 불법 파송 중지 및 대표자증명 발급 요청의 건과 총회재판국에서 제출한 총회재판국 판결문 관련 행정지시 청원의 건은 권징조례 제138조에 의거 제104회 총회에서 채택될 때까지, 총회 재판국 판결시점 이후의 본 사건에 관련한 새로운 조치(노회 및 교회)를 인정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 ③ 한성노회 목양교회 관련 건으로, 김성경 목사가 제출한 목양교회 유지재단 가입 서약서, 당회 회의록과 김성경 목사 측을 한성노회로 인정하고 서류 발급해 줄 것을 청원한 건과 김영길 목사가 제출한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에 대한 이행 통보의 건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 심리중이므로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④ 경남노회에서 제출한 무임장로에 대한 질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⑤ 경기중부노회에서 제출한 윤익세 목사의 제103회기 총회총대자격 불법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맡기기로 하고 위원은 박재신, 신규식, 신현필 목사, 최덕규, 윤병수 장로로 가결하다.

- ⑥ 순천노회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가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의 건은 서기단에서 검토하여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⑦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윤익세 목사 자격 질의의 건과 김정호 목사 자격 질의의 건 및 동안주노회의 김정호 목사에 대한 질의 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선관위에서 처리토록 선관위에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⑧ 재정부에서 제출한 기독교신문사 재정청원에 대한 자문 요청의 건은 재정부에서 처리토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⑨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청원한 예산 추경 청원의 건과 총회행정 프로그램 개발 예산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부에 일임하여 검토한 후 총회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⑩ 충신대학교에서 제출한 교단신학대 총신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⑪ 소위원회 보고서

- 가. 중부노회 소위원회는 해산하였음을 보고하니, 양측의 중재를 위해 소위원회가 더 활동토록 하고 분쟁 중인 교회에 대하여는 행정보류기로 가결하다.
- 나. 성석교회 화해수습을 위한 소위원회는 양측의 화해가 불가하여 해산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소위원회가 양측 화해를 위해 더 활동토록 가결하다.
- 다. 구조조정 후속처리 소위원회의 경과를 중간보고하니 받고, 추후 완전보고토록 가결하다.
- 라. 전남제일노회와 서광주노회 관련 소위원회는 서광주노회에서 감사를 요청하였으므로 감사부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⑫ 제103회 총회 수입사항 처리 건으로

- 가. 새가족 총대 정리 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하여 서기에게 보고토록 가결하다.
- 나. 납골당 건으로 손실된 연금을 5~10년 동안 총회 재정으로 보존하자는 건은 연구위원을 내도록 제104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가결하다.
- 다. 정치부 조직 개편 및 총회기구 조정을 위한 규칙개정 건은 제104회 총회 유안건으로 다루기로 가결하다.

⑬ 합동과 통합 교단 연합기도회는 총무와 서기에게 맡겨 진행토록 가결하다.

- ⑭ 직원 지도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 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⑮ 사설언론 허위보도나 SNS 허위글로 총회(총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24) 제24차 임원회

☞ 일 시 : 2019. 8. 21(수)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소(2019가합549710, 서울중앙지법)는 총무에게 맡겨 총회에서 대응토록 가결하다.
- ③ 김성경 목사가 제출한 한성노회 대표자가 누구인지 질의의 건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④ 함경노회에서 제출한 강태구 목사 조사처리와 천서증지의 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 ⑤ 서경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의 편재영 씨 재심청구 환부에 대한 서경노회 재판국 판결 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하고, 제103회 총회 의결사항 이행 촉구 탄원서는 보류하기로 하다.
- ⑥ 서광주노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촉구 청원의 건은 제104회 총회에 청원토록 답변키로 가결하다.
- ⑦ 용천노회에서 요청한 공덕교회 전산등록 요청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⑧ 충신대학교에서 제출한 충신대학교 장기 미처리 및 부채 상황 보고의 건은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⑨ 김선규 목사와 서현수 목사가 제출한 제101회 총회장 고발사건 변호사 선임 요청의 건은 서기와 총무에게 맡겨 법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토록 가결하다.
- ⑩ 구조조정후속처리소위원회에서 총회수임사항에 대한 처리안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가결하다.
- 가. 연금지원금 환수: 지원금의 10% 환수, 환수방법은 은급재단에 맡겨 처리토록 하고 환수금액은 직원협의회 선교목적기금으로 사용, 총회 보고 후 은급재단에서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한다.
- 나. 업무규정 중 보수규정 개선 건
- ㉠ 직책수당: 대리, 과장 25만원으로 인상, 차장 이상 동결
 - ㉡ 교통비: 직원, 주임 10만원으로 인상, 대리 이상 동결
 - ㉢ 면허수당 신설: 유지재단 2명(기능자격증 보유) 각 10만원 지급
 - ㉣ 시간외수당: 현행 인정시간 100% 증가(가급적 주어진 근무시간 내 업무처리 원칙)
 - ㉤ 별도 수당 지급 폐지, 그에 상응하는 직급호봉 부여(박경현 직원)
 - ㉥ 연차수당: 전체일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미사용일수 임원회 결의로 보상, 단 총무는 제외
 - ㉦ 총무임금제도: 연봉제로 전환(세부 시행사항은 위원회 보고대로)
- 다. 명예퇴직금 환수 건: 200만원으로 조정 회수키로 하다.
- ⑪ 총회본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누락된 사무분장 조정 및 부서 직제를 조정하기로 하다. 단, 제102회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3국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①기획행정국 재무과를 재무부로 승격, 회계 일원화(출판회계 통합, 이동), 총회신학원 업무 추가, ② 교육출판국을 교육전도국으로 ③전도법인국을 법인출판국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회록서기와 회계에게 맡겨 업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 ⑫ 본부 인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직원 승진 추천의 건은 아래와 같이 처리키로 하다.
- 가. 대우자 승진(7명)
- 정건수 국장대우 → 국장, 김귀분 부장대우 → 부장, 양재권 부장대우 → 부장
조미예 차장대우 → 차장, 오은총 차장대우 → 차장
윤석훈 대리대우 → 대리, 남장근 대리대우 → 대리
- 나. 일반 승진(6명)
- 김은미 과장 → 차장대우, 주정중 과장 → 차장대우, 윤옥정 대리 → 과장대우
서영미 대리 → 과장대우, 오광중 주임 → 대리대우, 박경현 직원 → 주임
- ⑬ 직원 상별 처리의 건으로
- 가. 수고한 직원을 선정하여 격려하기로 하고, 총무와 회계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나. 제23차 임원회 시 총무에게 맡겨 지도토록 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규정 제9장 62조(근무불량), 10장 72조(누설방지)에 저촉된 바, 58조(상별위원회)와 61조(징계)에 의거 시달서를 제출토록 하고 경고조치키로 가결하다.



- ⑭ 총회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제출한 제103회 총회 수요예배 헌금과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 헌금으로 농어촌 목회자 구제비와 독립유공자 자손 중 농어촌목회자 위로비와 총회역사위원회 전시회(제104회 총회기간) 비용으로 지원토록 청원한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 ⑮ 제103회 총회총대자격조사총회임원소위원회에서 요청한 소송비용 처리 요청의 건은 소송사건이 발생할 시 논의하기로 가결하다.
- ⑯ 총무가 9월 1일 오후4시, 평촌교회(림형석 통합 총회장)에서 개최기로 한 합동, 통합 연합기도회 준비 진행상황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 ⑰ 감사부에서 청원한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은 회계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 ⑱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교단 목사에 대하여 제23차 임원회 결의에 의거 장로부총회장, 회계,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25) 제25차 임원회

☞ 일 시 : 2019. 9. 4(수) 10:30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② 유안건으로 부서기 불법 당선 무효 이의제기에 대한 건은 제8차 임원회 시 소위원회 보고를 이의없이 받은 이후 특별한 추가사항이 없었으므로 투표하니, 8명 중 8명이 찬성함으로 종결하기로 가결하다.(보고서 첨부)
- ③ 감사부에서 제출한 감사보고에 의한 처리 요청의 건은 감사부가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결의로 처리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 ④ 교회실사조사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종보고는 보고로 받고,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 참고하기로 가결하다.
- ⑤ 함경도회에서 제출한 제99회 총회결의가 신규식 목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사처리 청원의 건은 현의인지 질의인지 확인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 ⑥ 동대구노회에서 제출한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재정 후원 추천의 건은 절차대로 총회에 청원토록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⑦ 삼산노회 이봉철 목사가 제출한 삼산노회 현재 상황 확인 요청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⑧ 김남호 목사가 제출한 소원장은 재심청구서가 현의부에서 반려되었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⑨ 강대유 목사가 제출한 재심청원서는 재심청구내용을 확인하기로 가결하다.
- ⑩ 구조조정후속처리 소위원회에서 제24차 총회임원회에서 맡긴 총회본부 업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 ⑪ 제103회 총회총대자격조사 소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목사와 서기 신현필 목사가 소위원회 조사 경과를 보고하니 최종보고를 차기회의 시 보고토록 요청하다.
- ⑫ 총무가 계약직원 황주용 목사가 2019년 9월 30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보고하니, 수리하고 격려하기로 가결하다.
- 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석교회와 관련하여 문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정 등에 대한 문의의 건은 서기에게 맡겨 답변토록 가결하다.
- ⑭ 9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 특별 상여금을 지급기로 하고 회계에게 맡겨 시행토록 가결하다.

- ⑮ 기독신문사 대여금 상환을 위한 광고비 공제금을 5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기로 가결하다.
- ⑯ 제104회 총회 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재정 지원하기로 가결하다.
- ⑰ 차기 회의는 9월 9일(월) 낮12시, 대전중앙교회에서 갖기로 하다.

2) 문서발급규정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16(금) 13:1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회본부 증명발급 및 문서발송 시행지침안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하다.
 - 가. 1. 각종 증명발급 관련 1)의 ② '노회(서기)의 확인'을 '노회의 확인'으로
 - 나. 2. 각종 문서발송 관련 4)의 '접수서류'를 '서류'로, 5)의 ② '금고에서 분출하여' 삭제
- ② 별첨 행정 민원서류의 종류 및 내부 발급지침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다.

3) 부서기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3(금)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를 조직하다.
 - 위원장 강의창 장로, 서기 이대봉 장로, 위원 이영구 장로
- ② 관련 대상자를 소환하여 소명서를 받기로 하며, 검토 후 소명일자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소환하여 실시하기로 하다.
 - 소명대상자 : 정창수 목사, 신신우 장로
 - 일시 : 2018년 11월 26일 오전11시 / 장소 : 총회회의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6(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을 유인물대로 채택하다.
- ② 정창수 목사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하고, 정창수 목사를 소환하여 총대 선출에 관한 사항과 금품수수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하다.
 - 가. 전남노회 총대 선출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목사 7명, 장로 4명을 동의 제청으로 총대 선정하였으며, 추가 장로 3명은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결의하였다. 장로 3명 선정 시 절차 상에 문제가 있었으나 천서위원회와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최초 4명의 장로만 인정하고 3명은 천서를 하지 않았다.
 - 나. 금품 수수에 대한 건은 부서기 정창수 목사는 본인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캠



프도 없었으며 누구에게도 부탁한 사실도 없고 사실 자체도 선거 후 알게 되었다. 신신우 장로는 개인 사정으로 본다. 아마 섬기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자에게 수고비로 주었음지는 몰라도 본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③ 신신우 장로는 11월 29일 오전 12시, 경산중앙교회로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1. 29(목) 12:00

☞ 장 소 : 경산중앙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신신우 장로를 소환하여 부서기 관련 선관위 금품수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듣다.
- ②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12. 5(수) 13:30

☞ 장 소 : 팔래스호텔

☞ 결의사항

- ① 신신우 장로가 제출한 소명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다.
- ② 부서기 및 신신우 장로 소명에 대한 심의 및 차기 순서를 협의하다.
- ③ 12월 중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12. 20(목)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4) 서기단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9. 7. 24(수)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22차 임원회에서 맡긴 경상노회 관련 건에 대하여 심의하여
 - 가. 이보길 목사 외 30명이 제출한 소원장과 이보길 목사가 총회임원회와 교회실사위원회에 제출한 불법당회 실사 요청서는 절차미비(노회경유 미비)로 보류하기로 하다.
 - 나. 이보길 목사가 제출한 상소장은 현의부로 이첩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8. 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하다.
- ② 이보길 목사 외 30명이 재제출한 소원장은 소원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반려하기로 하다.
- ③ 이보길 목사 외 30명이 제출한 총회문서에 관련된 답변 요청의 건은 교회실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 ④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가 제출한 유권해석 의뢰의 건은 순천노회에 박병선 장로의 질의에 대한 의견을 8월 12일까지 제출토록 요청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8. 19(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순천노회 순동교회 박병선 장로의 질의 청원의 건은 순천노회에서 소명한 답변서를 박병선 장로에게 보내 박병선 장로의 소명을 받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8. 29(목)

☞ 장 소 : 대전역

☞ 결의사항

- ① 순천노회 박병선 장로의 회신 내용을 확인하고, 9월 4일 임원회 후 모이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9. 9. 4(수) 13:30

☞ 장 소 : 반야월교회당

☞ 결의사항

- ① 박병선 장로의 질의에 대하여 노회의 확인과 박병선 장로의 소명서까지 확인한 바, 박병선 장로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로 가결하다.

5) 총회본부구조조정후속처리 및 업무규정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0. 26(금) 16: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이대봉 장로, 위원 진용훈 목사
- ② 소위원회 명칭을 '총회본부구조조정후속처리 및 업무규정관련 총회임원소위원회'로 하기로 하다.
- ③ 총회본부 업무규정을 고용노동부에 11월 2일까지 신고하기로 가결하다.
- ④ 총회연금 임의지원금 회수의 건(임원회 결의분)에 대하여 11월 2일까지 전도법인국장에게 상환방법을 제안토록 가결하다.
- ⑤ 직원 급여 인상 건은 기초자료인 지급현황(1년분)을 작성하여 11월 2일까지 소위원회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여 12월 중에 결정하기로 하다.



- ⑥ 인사 발령 건은 11월 23일까지 결정기로 하다.
- ⑦ 명예퇴직자 재입사의 건은 명예퇴직금을 상환하는 것을 검토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1. 8(목) 15: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반기로 가결하다.
- ② 업무규정은 11월 8일자 총회장 결재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토록 하다.
- ③ 연기금 임의지원금 상환방법을 11월 13일까지 제안하도록 재 지시하기로 하다.
- ④ 직원 인사 및 급여 인상의 건은 연기금 상환방법 결정에 따라 진행하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 일자는 11월 16일(금) 오전10시30분, 총회회의실에서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8. 11. 16(금) 10:2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은 유인물대로 반기로 가결하다.
- ② 업무규정은 기획행정국에서 11월 12일부로 고용노동부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다.
- ③ 총회연금 임의지원금 상환방법은 실무담당 박상범 국장의 보고를 받다. 직원 개인의 부담현황 및 해약 부담금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 참고하기로 하고, 직원회의에서 조속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11월 21일(수)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8. 12. 5(수) 14:30

☎ 장 소 : 팔래스호텔

☎ 결의사항

- ① 한〇〇 직원(명퇴) 처리에 관한 시말서 받은 것을 확인하고 명퇴금은 1/2 회수하는 것을 논의하고 보류하다.
- ② 직원 연금 지원금 회수의 건 상황을 논의하고 차후 다시 다루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8. 12. 17(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한〇〇 주임 명예퇴직금을 2분의 1을 회수하기로 결의하다.
- ② 직원 총회연금 지원금을 탕감하여 회수하기로 한 건은 국민연금과 중복 지원된 전 부분을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보고토록 하다.
- ③ 기타 사항은 총회연금 회수 처리 시까지 유보하기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9. 4. 8(월)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구조조정 소위원회가 결의한 한○○ 사원(주임) 명퇴수당 환수의 건이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기획행정국(총무, 국장)에서 4월 15일까지 조치 방법을 결정하여 보고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임원회에 보고키로 가결하다.
- ② 본부직원 은급재단 연금(임의지원금, 총회 및 임원회 결의 건) 환수의 건에 대하여 지연됨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원칙, 결의, 직원제안 등), 총무 주관으로 3개부서 국장과 협의하여 4월 15일까지 개인별 환수금 내역과 방안을 접수키로 가결하다.
- ③ 상기의 건이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시 직원 제반 관련 사항을 조기 검토키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4월 16일에 갖기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9. 4. 16(화)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한○○ 주임 건은 담당부서장(총무, 국장)에게 금주 중 본인과 협의하여 보고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하기로 하다.
- ② 직원의 총회연금 이중 지급 회수의 건은 근로자위원회의 의견을 확인하고, 총무, 각국 국장, 근로자대표 및 소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조정안을 논의키로 하다.
- ③ 직원연금 이중 지급 부담분 내역은 금일 중 법인국장에게 제출토록 하다.
- ④ 연금 입금 중지자의 건은 조속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 임원회의 때 보고키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5월 7일(화)에 갖기로 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9. 8. 1(목) 14: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직원 연금 회수의 건은 총액(탕감 후 25%)에 대하여 10%를 환수하여 직원선교비로 관리 사용 시 임원회 보고 후 집행키로 하다.
- ② 직원 인사에 관하여는 총회장의(임원회 시 발표) 의견을 수렴하여 차후 회의 시 자료와 함께 논의키로 하다.
- ③ 한○○ 주임 명예퇴직수당 회수의 건은 본인 동의를 따라 200만원으로 하다.
- ④ 기타 직원에 관한 제반 문제들은 다음 회의 시 논의키로 하다.

(9) 제9차 회의

㉪ 일 시 : 2019. 8. 8(목)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임○○ 주임이 서류발급 업무와 관련하여 충남노회 서기와 통화한 답변 녹취록이 재판정에 제출되어 업무규정 제9장 62조(근무불량), 10장 72조(누설방지)에 저촉된 바, 58조(상벌위원회)



와 61조(징계)에 근거 총무 의견을 받아 상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다.

- ② 직원 인사(승진) 관련 건으로 지난해 대우 발령자 승진 및 신규 승진자는 규정 10조(승진)에 근거 인사위원회의 건의를 8월 13일 오전까지 소위원회에서 접수, 검토키로 하다.
- ③ 부서내 업무에 따른 일부 직원의 보직 이동 등은 본부 인사위원회 건의 및 소위원회의 안을 임원회에 보고 조치하기로 하다.
- ④ 상비부 간사 장기간 담당자는 적정 인원을 순환 배치토록 본부에 권장하고 보고를 받기로 하다.
- ⑤ 임금제도 개선의 건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가. 직책수당 : 현행_ 대리,과장 20만원, 차장 30만원, 부장 40만원, 국장 50만원
 변경_ 대리,과장 25만원

나. 교 통 비 : 현행_ 직원,주임 5만원, 대리,과장 15만원, 차장,부장,국장 20만원
 변경_ 직원,주임 10만원

다. 일부직원(3명) 수당 지급금 개선

- ㉞ 유지재단 공무원 2명 기술수당(대외면허사용)

현행_ 없음

개선_ 면허수당 혹은 기술수당으로 신설

- ㉟ 출판국 박경현 사원(서점관리, 대출, 경력 10년)

현행_ 영업수당 20만원, 장려수당 14만여원 (총 34만원)

변경_ 타직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단일 수당 폐지(전직원 일원화)

해당직급 부여하여 임금유지

라. 직원 시간외수당 : 현행_ 직원60h, 주임50h, 대리46h, 과장40h, 차장32h, 부장24h
 변경_ 50~100% 확대

마. 직원 연차 사용 일부 개선

현행_ 연차 사용 독려(미사용시 소멸, 보상없음, 평균잔여일수 7~8일)

변경_ 전체일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일수는 임원회 결의로 지급 가능토록 한다.

단, 총무직은 정무직으로써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바. 총무 임금 제도 개선

정무직(선출직)으로써 근로자들과 같은 각종 수당 분개 방식에 문제점 많음

- ㉞ 현 총무 임금제 개선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

· 남은 임기까지 현행 기준 총액 변동 없음

· 기본 월지급분 책정(과세), 기타 활동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분류하여 총회와 본인 쌍방 과세 부담 경감

- ㉟ 총무 신규 임용 시

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협의로 연봉금액 조정하여 시행하면 제반 문제 소지가 없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⑥ 현행 3국 체재 유지, 국 내부 부서간 이동 인사 등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회의 시(8월13일)까지 보류키로 하고, 상기내용 관련 규정 개정에 필요한 보완사항은 임원회 전까지 진용훈 목사, 이대봉 장로에게 맡겨 작성토록 하다.

(10) 제10차 회의

☞ 일 시 : 2019. 8. 13(화) 15: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 결의사항 총무 이하 사무국 이해 관계 확인 및 연금지원금 관련 권고안 부서별 동의 여부 확인 후 조기 완료토록 한 후 차기 회의 시 참고키로 하다.
- ②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상별내용 포함) 접수, 검토하다.
- ③ 정리된 내용을 총회장, 부총회장에게 보고키로 하다(날자 미정).
- ④ 모든 인사 및 관련사항은 8월 31일까지 종료키로 하다.

(11) 제11차 회의

☞ 일 시 : 2019. 8. 19(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상별 사항(포상, 징계 등)을 검토하다.
- ② 본부 직제 검토하다.
- ③ 인사 승진 사항을 검토하다.
- ④ 총회임원회 수입사항을 배석 목사님들에게 설명하고 보고와 규정 개정의 건을 검토하다.

(12) 제12차 회의

☞ 일 시 : 2019. 8. 29(목) 16:30

☞ 장 소 : 대전역

☞ 결의사항

- ① 임원회 결의사항 중 총회수입사항과 결의한 인사위원회 추천 사항을 검토하다.
- ② 결의내용과 관련 총회수입사항 보고 및 개정규정을 검토하다(검토 요약 부분만 총회 보고 후 개정 규정 신고키로 함).
- ③ 상별위원회 결의내용 및 수입사항, 인사 관련 사항, 직제 변경사항을 구분해서 총회본부에서 총회장 품의 결정토록 확인하다.
- ④ 직원 인사 일부 및 승진 상별은 9월 1일자로 기준토록 하다.
- ⑤ 기타 직제 변경에 따른 국장급 인사는 총회장 의사에 따라 처리키로 함을 확인하다.

6) 재판현황검토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16(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하다.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이대봉 장로
- ② 총회장님께서 학교 당국에 요청해서 총신신대원생 검찰 송치 건을 취하 권고토록 하다.
- ③ 기타 건으로 김정훈 목사 건은 양재권 목사가 승소금을 1100만원으로 협의하기로 하다.
- ④ 향후 지금까지 승소한 부분의 소송 청구의 건은 확인한 후 청구조치를 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2. 17(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가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OK연합법률사무소 오병주 변호사를 통해 담당했던 소송관련 내용을 보고받다.

7) 중부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2. 11(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종준 목사, 서기 진용훈 목사, 회계 이대봉 장로
- ② 최규식 목사 측이 제출한 중부노회 임원조직 보고와 직인변경 보고에 대하여는 중부노회 소집에 대한 총회임원회의 지도에 따라 조직되었으므로 받기로 가결하다.
- ③ 박봉규 목사 외 13명이 제출한 재심청구서는 제103회 총회결의로 정직된 노회장과 서기를 경유하였으므로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 ④ 박봉규 목사 외 11명이 제기한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103회 총회재판국 판결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21616) 신청에 대하여는 중부노회(노회장 최규식 목사)에 맡겨 대응토록 하되, 재판비용도 해 노회가 부담하도록 가결하다.
- ⑤ 위 가처분신청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가결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2. 17(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김용제 목사 측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정도대로 대응키로 하다.
- ③ 문제로 제기된 부노회장의 자격 시비와 관련하여 서기에게 맡겨 노회장 최규식 목사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 지시키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1. 25(금) 15:5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중부노회에서 요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대응 입증 자료 요청의 건'(문서번호 중부 제 19-008호)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3. 15(금) 13:00

☞ 장 소 :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616 효력정지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총회 측의 승소 판결을 보고 받다.
- ③ 새하남교회 관련 탄원서와 관련하여 노회가 법에 따라 지도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다.
- ④ 노회 전산 행정 처리 요청 건과 관련하여
 - 가. 노병균 목사의 이명 및 초원교회 노병균 목사로의 담임교역자 변경은 허락하기로 하다.
 - 나. 자유로교회 및 드림교회의 교회주소 변경은 허락하기로 하다.
 - 다. 신창제일교회의 강희창, 서동식 장로의 전산 신규등록은 허락하기로 하다.
 - 라. 양들의 교회(이상록 목사)의 교회등록신청은 허락하기로 하다.
 - 마. 최신영 목사의 이명 및 강동제일교회의 최신영 목사로의 담임교역자 변경은 허락하기로 하다.
 - 바. 이호석, 남성진 목사의 강도사에서 목사로의 직분 변경은 허락하기로 하다.
 - 사. 안요한 목사의 신규 노회원 등록은 허락하기로 하다.
 - 아. 김낙주 목사의 이명은 허락하기로 하다.
- ⑤ 차기 회의는 3월 18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 일 시 : 2019. 3. 18(월)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인혜교회 김종구 장로와 관련하여 장로 임직의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총회전산의 등재는 허락하기로 하다.
- ③ 중부노회의 화해 및 분립을 위한 차후 절차는 총회장과 서기가 합류하여 진행키로 하다.

(6) 제6차 회의

☞ 일 시 : 2019. 5. 9(목)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중부노회가 제출한 '총회전산망(GAIS) 회복청원서'는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 ③ 김용제 목사 측이 제출한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원상복귀와 정상화 요청'과 이남철 목사 외 7인이 제출한 '고소장 청원서', 남창욱 목사가 제출한 '임원 및 언권회원에 관한 질의'와 '최규식 측 불법행위 탄원'은 임원회에 이첩키로 하다.
- ④ 소위원회의 역할을 임원회에 보고하고 종료키로 하다.

(7) 제7차 회의

☞ 일 시 : 2019. 5. 21(화) 11: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다시 이첩한 김용제 목사 측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원상복귀와 정상화 요청', 이남철 목사 외 7인의 '고소장 청원서', 남창욱 목사의 '임원 및 언권회원에 관한 질의' 및 '최규식 측 불법행위 탄원'은 법리 검토를 하기로 하다.
- ③ 최규식 목사 측을 면담하다(참석자 : 최규식, 이택규, 최용진).
- ④ 김용제 목사 측을 면담하다(참석자 : 김용제, 한상진, 정순기).
- ⑤ '중부노회'로의 명칭 사용에 관한 건은 추후 양측을 중재기로 하다.

(8) 제8차 회의

☞ 일 시 : 2019. 7. 4(목) 16:15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김용제 목사 측의 정기노회 상황보고서를 확인하다.
- ② 최규식 목사 측에서 요청한 총회전산 정보 처리 및 서류발급 요청에 대해 본 소위원회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서기에게 이첩키로 하다.
- ③ 남창욱 목사의 이택규 목사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확인하다.
- ④ 소위원회의 활동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종료기로 하다.

8) 충남노회 정보변경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1. 16(금)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박재신 목사로 정하다.
- ② 충남노회 교회 정보변경 처리의 건 중 임시당회장 파송 건은 노회 상황 파악을 위해 보류하고, 천안은혜로교회 명칭 변경 및 주소 변경과 아산중부교회 주소 변경은 처리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9. 1. 24(목)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박재신 목사의 불참으로 정창수 목사에게 서기 대행토록 하다.
- ② 정창수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③ 박노섭 목사 외 31명이 제출한 '충남노회 교회 정보변경(임시당회장) 청원의 건 반려 및 충남노회 총회헌법(총회결의) 위반 조사처리 청원의 건'을 검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이의택 장로(아산사랑의교회 장로 사임)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다.
- ④ 차기회의는 2019년 3월 5일(화), 오후2시에 갖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 일 시 : 2019. 3. 5(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박재신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박노섭 목사 외 31명이 제출한 '충남노회 교회 정보변경(임시당회장) 청원의 건 반려 및 충남노회 총회헌법(총회결의) 위반 조사처리 청원의 건'에 대해서 참고인 이의택 장로(아산사랑의 교회 장로)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참고인이 개인 사정상 불참하여 차기 회의에서 다시 불러 확인하기로 하다.
- ③ 차기회의는 2019년 4월 2일 오후2시에 갖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 일 시 : 2019. 4. 16(화) 13: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서기 박재신 목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받기로 하다.
- ② 윤익세 목사로부터 충남노회 상황을 청취하다.
- ③ 차기 회의는 2019년 5월 2일 임원회의 후에 갖기로 하다.

9) 경기북노회 관련 소위원회**(1) 제1차 회의**

☞ 일 시 : 2018. 10. 26(금)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김종준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 ② 양측과 면담하다.
가. 송교익 목사 측 의견을 경청하다.
나. 김성수 목사 측 의견을 경청하다.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8. 11. 16(금) 13: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전 회의록 그대로 받기로 하다.
- ② 11/20(화)에 총회장님과 경기북노회 양측이 만난 후 경과를 보기로 하다.



10) 어린이세례 후속조치 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8. 12. 27(목)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장 김종혁 목사 서기 김한성 목사로 조직하다.
- ② 어린이 세례 홍보의 긴급한 필요에 따라 기독교신문과 총회 홈페이지에 홍보하기로 하다.
- ③ 어린이 세례 문답집을 2월 말까지 발간하기로 하고 총회 산하 전국교회가 사용하도록 하다.
- ④ 학습세례문답집에 어린이 세례문답을 추가하기로 하고 교육용 및 지도자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다.
- ⑤ 어린이 세례자의 성찬 참석은 입교 후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다.
- ⑥ 어린이 세례문답집 발간을 위한 교수 전문위원은 지방신학교(갈신, 대신, 광신) 포함 5명으로 하고, 목회자 전문위원 5명 및 자문위원(증경 총회장) 5인으로 하되 보수 추천하여 다음 회의 시 논의하기로 하다.
- ⑦ 2019년 1월 8일 오전 11시에 차기 회의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1. 8(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자문위원(증경 총회장)으로 길자연 목사, 김정중 목사, 서기행 목사, 장차남 목사, 김선규 목사 로 선임하기로 하다.
- ② 목회자 전문위원으로 김진하 목사 이성화 목사(서울권역), 송종완 목사 한기승 목사(중부호남 권역), 배광식 목사 남세환 목사(영남권역)로 선임하기로 하다.
- ③ 교수 전문위원은 차기 회의 시 선임하기로 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1. 17(목) 10:00

☞ 장 소 : 총신대학교

☞ 결의사항

- ① 교수 전문위원은 박용규 신대원장(총신대), 정희영 총장대행(총신대), 김근수 총장(갈빈대), 최 대해 총장(대신대), 황성일 교수(광신대)로 선임하기로 하다.
- ② 예산 청원하기로 하다.
- ③ 모든 자료를 1/21(월)에 감수위원들에게 발송하기로 하되 일주일간의 기한을 두기로 하다.
- ④ 차기 회의는 1/31(목) 오전 11시에 모이기로 하되 김한성 목사와 노재경 목사만 만나 감수한 것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하다.

(4) 제4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1. 31(목) 11:00

☞ 장 소 : 성산교회당

☞ 결의사항

- ① 어린이 세례 매뉴얼 및 문답집 감수 확인하다.
- ② 미제출된 감수본은 추후 확인하기로 하다.
- ③ 제출된 감수를 반영하여 편집하기로 하다.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2. 21(목) 10:30

☞ 장 소 : 총신대학교

☞ 결의사항

- ① 자문위원으로 총회임원을 추가하기로 하다.
- ② 어린이세례문답서 최종본을 총회임원회에 상정한 후 확정되면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하다.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3. 15(금) 13:30

☞ 장 소 : 총신대학교

☞ 결의사항

- ① 신앙적 후견인을 부모 또는 교사로 된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표기해서 수정하여 올리기로 하다.
- ② 홈페이지에 제102회, 제103회 결의도 올리기로 하다.
- ③ 총회어린이세례후속조치소위원장이 총회장께 보고하여 시행하기로 하다.
- ④ 헌법 258페이지를 참고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기로 하다.
- ⑤ 기독교신문에 헌법과 총회결의사항 보완하여 어린이세례문답집 재공고하기로 하다.

11) 제103회총회총대자격조사소위원회

(1)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7. 30(화) 12: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위원회 명칭을 “제103회 총회총대자격조사처리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신규식 목사, 서기 신현필 목사, 총무 최광염 목사, 회계 최덕규 장로
- ② 다음 모임을 2019년 8월 6일(화) 오후2시에 갖기로 하다.

(2)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6(화) 14: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아래와 같이 조직하다.
위원장 신규식 목사, 서기 신현필 목사, 총무 박재신 목사, 회계 최덕규 장로
- ② 조사처리 과정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하다.
가. 윤익세 목사에게 소명서(경기중부노회 청원서에 의거 이중직과 폐당회에 대한)를 8월 13일(화)까지 제출토록 공문을 시행하기로 하다.
나. 칼빈대학교 담당자에게 윤익세 목사의 재직현황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기로



하다.

다. 폭행 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기로 하다(불응답시 중지하기로 함).

라. 천서위원회에 윤익세 목사에 대하여 조사 중인 관계로 천서를 잠정 보류토록 청원하기로 하다.

③ 차기 회의는 8월 20일(화) 오전10시30분에 갖기로 하다.

(3) 제3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13(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박노섭, 이상규 목사 조사 및 의견을 청취하다.

② 충남노회 측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참석치 않았으므로 8월 21일(수) 오전10시에 2018년도 노회장과 서기를 추가하여 재소환키로 하고, 윤익세 목사는 오후 1시에 소환하기로 하다.

③ 8월 23일(금) 오전10시에 전 총회장님 4분과 제99회기 충남노회 지도위원 4명을 소환하기로 하다.

④ 추후 필요시 총회직원도 소환하기로 하다.

⑤ 칼빈대학교에서 제출한 이중직 관련 해당자 보직 및 강의내역 사실확인서를 검토하고, 윤익세 목사가 문교부에 등록된 교수인지 추가로 질의하기로 하다.

(4) 제4차 소위원회(임원회)

☞ 일 시 : 2019. 8. 20(화) 12:4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본 조사위원회 활동으로 인하여 상대쪽(윤익세)으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방어를 위한 모든 비용(변호사비 등)을 총회에서 지불해 줄 것을 요청키로 하다.

② 폭행 건에 대한 피해자(이의택 장로)를 출석케 하여 사실을 확인 조사키로 하다.

③ 윤익세 목사가 제100회와 제103회 총회임원(부서기) 입후보 시 선관위에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총회 기획행정국에 제출 요청하여 사실 조사키로 하다.

(5) 제5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21(화)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① 이상규 목사, 이단화 목사, 이의택 장로를 불러 조사하다.

② 윤익세 목사가 소환에 응하였으나 진술치 않고 돌아가다.

③ 기타 안건으로 증부노회 재판에 대해 김용제 목사와 정순기 목사를 불러 조사하다.

④ 윤익세 목사를 8월 27일(화), 오후 2시에 재소환하기로 하고, 위원회는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이기로 하다.

⑤ 지난 회의 시 충남노회 지도위원(이호영 장로, 이춘만 장로, 김동관 목사, 김정훈 목사)과 증경 총회장(백남선 목사, 박무용 목사, 김선규 목사, 전계현 목사)을 소환하기로 결의하여 8월 23일 출석토록 공문과 전화로 요청한 바, 한 번 더 전화하여 출석을 요청 드리도록 기획행정국 담당자에게 지시하기로 가결하다.

⑥ 금일 출석요청에 불응한 충남노회측에도 8월 27일(화) 오전11시에 출석토록 요청하기로 하다.

(6) 제6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23(금) 10: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제101회기 총회장 김신규 목사님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가. 총회장 명의로 인수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
 - 나. 총회 기본서식 중 목사안수증명서는 노회의 요청 시만 발급해 줄 수가 있다.
 - 다. 제102회 총회에서 이증직에 대한 결의를 확인하다.
 - 라. 제101회 총남노회 관련 총회임원회 결의사항을 제출하다.
- ② 백남선, 전계현 증경총회장에게 8월 27일 오후 3시, 2차 출석요청을 보내기로 하다.

단, 소환에 불응 시 백남선 총회장 당시 백남선 총회장 이름으로 윤익세 목사의 인수증명서와 사실확인서를 발부해 줄 때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부한 것인지, 아니면 총회장 직권으로 발부한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기로 하다.
- ③ 총회지도위원을 소환하였으나 모두 사유를 대어 소환에 불응함으로, 김동관 목사에게 위원장이 소환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녹음으로 소환에 불응 시 객관적 조사자료와 한쪽 편(총남노회 분립 직전 임원들의 증언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을 통보하다.
- ④ 제99회 총회 선관위원장 박신범 목사, 심의분과장 서광호 목사 代 서기 배재철 목사, 제102회 선관위원장 이은철 목사, 심의분과장 김정설 목사를 8월 27일(화) 오후 4시에 소환하기로 하다.

(7) 제7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27(화) 10:3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윤익세 목사가 제출한 이력서에 교육학석사와 신학석사를 취득했다고 기록한 바, Azusa Pacific University에 사실확인을 요청하기로 하다.
- ② 이호영 장로와 전계현 증경총회장 소환 청취하다.
- ③ 임준수 주임, 전성민 과장, 노재경 국장에게 관련 업무 과정 질의 청취하다.
- ④ 다음 일정으로 8월 28일(수) 오전11시 중부노회 최규식 노회장 측, 오후 1시에 총남노회 측을 재소환하기로 하고, 8월 29일(목) 오전11시 지도위원, 오후1시 증경총회장 백남선, 박무용 목사를 소환하기로 하다.
- ⑤ 윤익세 목사는 8월 29일(목) 오후에 병원으로 방문하여 조사하기로 하다.
- ⑥ 칼빈대학교와 칼빈신학교에 윤익세 목사의 4년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 사실 조회 공문 보내도록 결의하다.

(8) 제8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28(수)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총남노회(윤익세 목사 측) 관련자들을 4차례 소환하였으나 불응하였으므로 상대 측(박노섭 목사)의 증언과 객관적인 서류들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여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 ② 증부노회(최규식 목사 측) 관련자들을 소환하였으나 불응하였으므로 상대 측(김용제 목사)의 증언과 객관적인 서류들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여 채택하기로 가결하다.
- ③ 8월 29일(목) 오전11시, 지도위원 김동관 목사와 이춘만 장로에게 출석 요청하고, 오후 1시에 증경총회장 백남선 목사와 박무용 목사에게 출석 요청하다.
- ④ 8월 29일(목) 오후에 순천향병원(천안)에 방문하여 윤익세 목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확인하고 재방문 조사하기로 가결하다.
- ⑤ 8월 29일(목) 저녁 6시에 속회로 모이기로 가결하다.
- ⑥ 8월 30일(금) 오전11시, 다음 회의를 하기로 가결하다.

(9) 제9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29(목)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만약 윤익세 목사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경우 모든 비용을 총회에서 지급하기로 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하기로 결의하다.
- ② 윤익세 목사에 대한 방문조사를 서면으로나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8월 30일 오후 12시까지 답변 받기로 결의하다.
- ③ 8월 30일까지 조사내용 초안을 작성하여 전체회의에서 검토하기로 결의하다.
- ④ 백남선, 박무용 증경총회장 및 충남노회 지도위원 김정훈, 김동관 목사, 이춘만 장로는 소환에 불응함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기로 가결하다.

(10) 제10차 소위원회

☞ 일 시 : 2019. 8. 30(금) 11:00

☞ 장 소 : 총회회의실

☞ 결의사항

- ① 보고서를 심도깊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도록 가결하다.
- ② 9월 2일(월) 오전11시에 다시 모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3. 주요사업

1) 제56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 (1) 기간 : 2019년 5월 13일(월) ~ 15일(수)
- (2) 장소 : 광주겨자씨교회당(나학수 목사 시무)
- (3) 주제 :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
- (4) 설교 및 강의

5월13일	개회예배	총회장 이승희 목사_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 1
	저녁집회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_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 2
5월14일	새벽기도회	이춘복 목사(남현교회)_ 사랑
	전체특강	안재우 소장(복화술연구소)_ 하나님의 손 김황식 전 총리_ 대한민국의 현재와 교회의 역할
	트랙강의	송영식 목사(서광교회)_ 성경에 나타난 여성 사역자들의 지위와 역할 김남순 소장(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_ 100세 시대 목회자 및 장로의 건 강한 은퇴준비
		백희정 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_ 언어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봉 통일신학박사(하나와 여럿 통일연구소)_ 통일시대, 통일가치
		김윤생 목사(은혜교회)_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임종구 목사(푸른초장교회)_ 이것이 장로교회다
	저녁집회	박성규 목사(부전교회)_ 일어나 함께 희망으로 3
5월15일	새벽기도회	박용규 목사(가창교회)_ 영적 리더십
	전체특강	정성구 교수(한국칼빈주의연구원)_ '포용주의'를 포용할 것인가?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_ 흔들리는 세대 속에서 현재 교회의 할 일
	폐회예배	부총회장 김종준 목사_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2) 교회 내 언어 및 성폭력 예방교육

- (1) 시행근거 : 목회자 성윤리 교육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적절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담임목사, 부목사, 기관목사 및 교회 직원 등을 대상으로 3개 권역별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가결하다.(총회실행위원회 결의)
- (2) 주제 : 언어폭력과 교회 사역자의 품격 있는 언어생활
한국사회 미투 실태와 교회 사역자의 자기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 (3) 권역별 세미나 개최
 - 가. 1차 : 2019.4.1., 대구동신교회당(권성수 목사)
강사_ 김경미 교수(에스테스힐링심리상담센터장)
정용남 소장(로페가정상담소)
 - 나. 2차 : 2019.4.2., 총회회관 2층
강사_ 박하연 경위(서울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
박인경 강사(한국심리상담연구소)
 - 다. 3차 : 2019.4.3. 대전중앙교회당(고석찬 목사)
강사_ 양은숙 강사(행복한 직장 카운슬러)
최영미 소장(대전폭력예방통합교육연구소)



3) 총회장상 시상

- (1) 시행근거 : 총회장상 포상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제103회 총회결의)
- (2) 시상 : 제56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시 시상
- (3) 시상내역

가. 밀알상(개인)

- ① 이춘복 목사(홍동노회 남현교회) : 교회 개척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7개의 지교회를 세움 등
- ② 권순웅 목사(평서노회 주다산교회) : 학원선교를 위한 지원 및 섬김 사역에 기여
- ③ 박광재 목사(남평양노회 영광교회) : 제비뽑기 제도의 일부 시행 및 총신 장학기금 지원사업, 순교신앙 회복과 역사 의식 고취 사업에 기여
- ④ 천석봉 목사(서울강남노회 천군군인교회) : 군인교회 사역과 전도/문화행사, 군인교회 방문 등 군 선교사역에 기여
- ⑤ 최영학 목사(경기북노회 세계로교회) : 2019년 3월 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장에서 2살 영아를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총회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침
- ⑥ 정평수 목사(성남노회 은퇴목사) : 교회 개척 후 35년간 건강한 교회로의 성장에 대한 공적과 은퇴 이후로도 노회내 미자립교회 말씀 및 지원 사역
- ⑦ 이유경 장로(서울강남노회 양문교회) : 한국철도공사(KORAIL) 기독교 선교사업을 섬긴 공적과 교회 및 노회봉사, 선교 활동 등
- ⑧ 조신기 장로(대구중노회 봉덕교회) :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복음사역 등 외국인 선교사역 기여

나. 참빛상(교회)

- ① 서대전노회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 지역사회 섬김과 기독교대안학교의 역할 모범을 세우고, 여러 사업을 통한 대전지역과 국가사업에 기여
- ② 서울광업교회(조현삼 목사) :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 활동을 통한 재난지역(강원산불 지역 등)의 구제사업에 기여
- ③ 참사랑교회(김성태 목사) : 지역사회의 섬김과 복음화사역에 대한 공적과 해외와 국내 선교지원 사업에 기여

다. 등대상(단체)

- ①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장여구 교수) : 성산 장기려 박사(장로)의 이웃사랑정신을 계승하고 확산하는 사역(소외계층 진료사업, 해외 의료사역 등)에 기여

5) 헌법 개정 후속처리

- (1) 시행근거 :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712~722쪽)와 최종 결과로 157개 노회 중 137개 노회가 보고한 바(88%) 헌법정치 제4장 제4조 2항(시무 목사 건)은 부결되었으며, 그 외 조항들은 수의결과 통과되었음을 보고하고, 기독교신문 공고 및 헌법 개정본 발행과 전국 노회마다 비치용 1권 제공토록 위원회를 1년 연장해 줄 것을 청원하니, 청원사항은 총회 서기부가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결의)

(2) 시행내역

- 가. 헌법 개정본 발행 : 출판부에 이첩하여 출판토록 함
- 나. 기독교신문 공고
- 다. 어린이세례 신설에 대한 후속조치 : 어린이세례문답집 총회홈페이지 게재

6) 총회 홍보 동영상 제작

- (1) 시행근거 : 총회주일용, 이단경계주일용, 전도용 동영상 제작 및 배포 청원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가. 총회홍보동영상 : 초총회홈페이지 게재
 - 나. 이단경계주일용 동영상 : 이단대책위원회 이첩
 - 다. 전도용 동영상 : 전도부 이첩

7) 총회기구 조정

- (1) 시행근거 : 불필요한 상설기구 폐지, 총회기구 조정, 상비부 산하 상설위원회를 상비부로 통폐합 및 산하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건은 총회임원회에 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 (제103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가. 경찰선교회 폐지
 - 나. 통일준비위원회, 역사위원회, 교단연합교류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당연직 축소 : 해 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규칙부에 심의를 받도록 통지함
 - 다. 학원선교위원회 : 위원장을 학생지도부장이 맡도록 함
 - 라. 교정선교위원회 : 15인 중 7인은 전도부원에서 인선토록 함
 - 마. 위원회 명칭 변경 : 총회실행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의하고 규칙부에 규칙 개정 요청
경목부를 <경찰선교부>로, 학생지도부를 <학원선교부>로
 - 바. <교정선교부> 신설 :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로 규칙부에 규칙 개정 요청

8) 새가족 총대 정리

- (1) 시행근거 : 새 가족(개혁 측) 총대 정리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해당 노회에 2000년~2005년 총회총대 선출 관련 회의록을 제출토록 요청

9) 총회본부 구조조정 후속 처리

- (1) 시행근거 : 총회본부 구조조정에 의해 시행토록 결의된 총회 지시사항 시행 결의 요청(구조조정후속처리위원회 조직)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제103회 총회결의)
- (2) 시행내역
 - 가. **은급재단 연금지원금 회수의 건**
 - ① 최초 연기금제도 설립 시 목회자 외 본부 직원의 가입을 총회에서 권유하여 직원 본인부담금 50%를 복리후생비조로 품의 예산을 수립하여 2년간 지원하다가 제100회기 구조조정 시 품의없이 자동 지원된 사실을 지적하여 2015년 말 지원을 중단하고 임의 지원된 본인부담금을 환수키로 총회에 보고하고 회수키로 결의하였음
 - ② 임원 구조조정 소위원회에서 환수관계를 협의 중 직원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임금삭감(10%~ 32%)으로 생활고를 호소하고, 20여 년간 지원 시행한 것도 총회의 관리 부주의임을



인정하여 지원금 중 50%를 탕감해 줄 것을 제시, 국민연금 지원 시행(1998년도) 시기부터 환수기일(2015년 말)을 기산하여 환수 협의함

- ③ 직원들의 견해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아 직원협의회의 의견과 총회 결의정신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직원 개인별 10%(총금액 약 3천만원) 정도를 부담기로 협의하고, 환수방법은 은급재단에 개인별 연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하고 선인출하여 직원협의회 선교 목적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 ④ 단, 연금(I,II) 중간 해약자 및 연금 불입 중지자 등이 부담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간구, 1회에 한해 은급재단 규정을 개정하여 환수금 이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종료하기로 함
- ⑤ 위와 같이 총회 보고하고 결의하여 은급재단에 후속절차를 진행토록 하기로 함

나. 업무규정 임금제도 개선

- ① 사유 : 총회본부 업무규정 개정 시 보수규정은 차후에 개선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의 보수규정 중 불합리한 부분 일부를 임원회 결의로 조정하고 총회보고 결의 후 변경된 내용을 개정 보완하기로 함(보수규정 28조 조정 및 39조 1항 경과 규정 근거)
- ② 수당 조정 : 개정안 참조
- ③ 총무 임금 제도 개선
 - ㉗ 총무는 정무직(선출직)으로써 직원들과 같이 각종 수당 산개 방식에 불합리점이 많으므로 연봉제로 전환한다.
 - ㉘ 전환 시 기본급조 월지급액 산정(과세) 및 기타 업무추진비 등의 항목으로 총회와 본인의 쌍방과세 부담 경감(회계사 자문)하여 남은 임기까지 현행 기준 과세를 감안 감소 없도록 조정한다.
 - ㉙ 총무 신규 임용 시 : 공모 전 임원회 결의로 연봉금액 결정(사택제공 등) 시행하면 제반 문제점 해소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국장 만호봉을 기준해서 일정액 증액하고 퇴직금 지급은 직원과 동일하게 연수 계산토록 한다.

다. 본부 직제 조정

- ① 개요 : 제102회 총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결의된 1실 2국을 3국으로 개정함을 근거, 기초유지 및 일부 업무에 누락된 사무분장 조정 및 부서 직제조정으로 본부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② 기획행정국 변경사항
 - ㉗ 기획행정부 및 재무과를 부로 승격, 회계 업무 일원화(한시적 법인 제외) 총괄 관리한다.
 - ㉘ 재무부에 교육출판국 회계(수납관리담당) 1인을 이동하여 회계 업무에 일관성 유지 및 투명성을 확립(제4장 25조 나 9항 근거)
 - ㉙ 총회신학원 업무는 기획행정국에서 관리한다.
- ③ 교육출판국을 교육전도국으로, 전도법인국을 출판법인국으로 변경한다.
단, 법인회계는 당분간 실무이사 책임 하에 철저히 관리한다.

라. 업무규정 및 보수규정 개정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제4조 직급 및 인원	3. 연구직 ① <u>교육출판국</u> 장이 관리한다.	3. 연구직 ① <u>교육전도국</u> 장이 관리한다.	변경
제6조 임용 자격	3. 업무분장 및 자격 1) 교육출판국장은 교육행정, 멀티미디어·연구를 관리한다. 2) 교육행정(교육행정 전공자 및 관련 업무 및 논문제출자, 출판관련 업무 및 경력자) 3) 멀티미디어·연구(기독교심리, 교육공학, 기독교교육학 전공자 및 관련업무 및 논문 제출자) 4) 출판(출판관련업무 및 경력자) 4. 보수규정 : 보수규정에 따른다.	3항 삭제 4. 보수 : 보수규정에 따른다.	삭제 자구수정
제10조 승진	7. <u>교육출판국</u> 의 연구직 업무평가는 10조 1항에 준한다.	7. <u>교육전도국</u> 의 연구직 업무평가는 10조 1항에 준한다.	변경
제26조 기구 및 임무	다. <u>교육출판국</u> : 1) 교육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 : 교육부, 신학부, 면려부, 학생지도부, 출판부, 순교자기념사업부	다. <u>교육전도국</u> : 1) 교육 전도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위원회) : 교육부, 신학부, 면려부, 학생지도부, 전도부, 농어촌부, 군목부, 경목부, 구제부, 사회부, 이단대책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유관 특별위원회	국명칭 변경 변경 변경및 위원회 삽입 (27조 소관부서 내용이동)
	라. <u>전도법인국</u> : 1) 전도사업과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 : <u>전도부, 군목부, 구제부, 농어촌부, 경목부, 은급부</u> 3) 재단 및 기관 : 유지재단, 은급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의 <u>이사회</u> 무, 기본재산관리, 임대사업관리, 건물관	라. <u>출판법인국</u> : 1) 출판 사업과 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업무를 담당한다. 2) 상비부 : 출판부, 순교자기념사업부, 은급부, 유관특별위원회 3) 재단: 유지재단, 은급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국명칭 변경 변경 변경 및 위원회 삽입 직무분장 내용(27조 중복) 삭제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제27조 직무 분장	<p><u>리. 경비업무</u></p> <p>1. 기획행정국 나. 기획행정국: 8) 상비부: 총회임원회, 정책실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규칙부, 헌의부, (절차, 천서, 통계, 공전), 재판국, 감사부, 정치부, 고시부, 재정부, 노회록검사부</p> <p>바. 재무과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8) 각 국의 모든 재정은 영리, 비영리로 구분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영리회계 담당 ② 비영리회계 담당(1명/유지재단)은 담당부서장, 총무의 지도를 받는다.</p>	<p>1. 기획행정국 나. 기획행정국: 26조와 중복, 삭제</p> <p>바. 재무부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8) 각 국의 모든 재정은 일반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되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일반회계 담당(재무부의 소속으로 한다) ② 법인회계 담당(1명/유지재단,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은 담당부서장, 총무의 지도를 받는다.</p>	<p>삭제</p> <p>변경</p> <p>재무부 소속명시</p>
	<p>2. 교육출판국 가. 교육행정 1) 교육행정-성경통신, 주교교사 통신 대학 학사업무 2) 교육회무-교육부, 신학부, 학생지도부, 면려부, 이단대책위원회 회의사무 지원 3) 교육기획-담당 상비부 사업계획, 행사기획, 실행업무 4) 교육부 신학부 및 유관 위원회와 기관의 사업을 위한 업무 5) 이단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세계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p> <p>나. 멀티미디어·연구 1) 교육 멀티미디어 개발 (1) 공과 멀티미디어 개발 (2) 교재 멀티미디어 개발 (3) 기타 멀티미디어 개발 2) 교육 연구 ① 주일학교 교육교재 집필, 교정, 편집 ②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③ 교육공과개발 세미나 기획에 관한</p>	<p>2. 교육전도국 가. 교육행정 1) 교육행정-성경통신, 주교교사 통신 대학 학사업무 2) 교육회무-교육부, 신학부, 학생지도부, 면려부, 이단대책위원회 회의사무 지원 3) 교육기획-담당 상비부 사업계획, 행사기획, 실행업무 4) 교육부 신학부 및 유관 위원회와 기관의 사업을 위한 업무 5) 이단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6) 세계신학 사조에 대한 연구</p> <p>나. 총회교육개발 1) 주일학교 교육교재 집필 편집 2) 주일학교 교육프로그램 개발 3) 교육공과 개발 집필 및 편집 4) 공과교육 세미나 기획 5) 총회 각종교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과 교재 미디어개발 7) 교육 멀티미디어 연구 개발 8) 기타 각종 교육교재 연구개발</p>	<p>국명칭 변경</p> <p>변경</p>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p>사항</p> <p>④ 교육부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p> <p>⑤ 공과 멀티미디어 개발</p> <p>⑥ 교재 멀티미디어 개발</p> <p>⑦ 기타 멀티미디어 개발</p> <p>다. 출판 (※ 법인출판국으로 이동)</p> <p>1) 출판팀 소관 회의사무(출판부)</p> <p>2) 출판, 인쇄, 외주관리, 발주, 입찰, 인쇄, 제작 관리</p> <p>3) 도서출판기획</p> <p>4) 편집, 교정</p> <p>5) 출판영업</p> <p>(1) 거래처 관리</p> <p>(2) 재고관리</p> <p>(3) 성경찬송 영업관리</p> <p>라. 소관부서: 교육부, 먼러부, 학생지도부, 신학부, 순교자기념사업부, 이단대책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유관 특별위원회</p>	<p>다. 전도행정</p> <p>1) <u>전도국 소관 상비부 회의사무(전도부, 농어촌부, 경목부, 군목부, 구제부)</u></p> <p>2) 이만교회운동 전략기획 및 실행업무</p> <p>3) <u>전도국 소관 상비부 행사지원</u></p> <p>4) <u>행사 유인물 제작, 행사장소 및 숙소 섭외, 행사경비 지출, 행사보고서 제작</u></p> <p>5) <u>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u></p> <p>6) <u>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개발</u></p> <p>7) <u>도시, 농촌교회 연계사업 정책 개발</u></p> <p>8) <u>각 구조별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 개발</u></p> <p>라. 특수전도 기획업무</p> <p>1) <u>군선교전략 개발, 지원</u></p> <p>2) <u>경찰선교 전략개발, 지원</u></p> <p>3) <u>도시개척교회 지원, 정책개발</u></p> <p>4) <u>교정전도</u></p> <p><u>26조와 중복, 삭제 및 개정</u></p>	<p>위치변경</p> <p>위치변경</p>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p>3. 전도법인국</p> <p>가. 전도행정 (※ 교육전도국으로 이동)</p> <p>1) 전도국 소관 상비부 회의사무(전도부, 농어촌부, 경목부, 군목부, 구제부)</p> <p>2) 일반교회운동 전략기획 및 실행업무</p> <p>3) 전도국 소관 상비부 행사지원</p> <p>4) 행사 유인물 제작, 행사장소 및 숙소 섭외, 행사경비 지출, 행사보고서 제작</p> <p>5)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원</p> <p>6)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 개발</p> <p>7) 도시, 농촌교회 연계사업 정책 개발</p> <p>8) 각 구조별 농어촌 사회복지시설 지원, 업무 개발</p> <p>나. 특수전도 기획업무</p> <p>1) 군선교전략 개발, 지원</p> <p>2) 경찰선교 전략개발, 지원</p> <p>3) 도시개척교회 지원, 정책개발</p> <p>4) 교정전도</p> <p>사. 소관부서:</p> <p>1) 상비부 - <u>은급부, 사회부, 유관특별위원회</u></p> <p>2) 재단 및 기관 - 유지재단, 은급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유지재단</p>	<p>3. 출판법인국</p> <p>가. 출판</p> <p>1) 출판팀 소관 회의사무(출판부)</p> <p>2) 출판, 인쇄, 외주관리, 발주, 입찰, 인쇄, 제작 관리</p> <p>3) 도서출판기획</p> <p>4) 편집, 교정</p> <p>5) 출판영업</p> <p>(1) 거래처 관리</p> <p>(2) 재고관리</p> <p>(3) 성경찬송 영업관리</p> <p>26조와 중복, 삭제 및 개정</p>	<p>국 명칭 변경</p> <p>위치변경</p> <p>삭제</p>
제65조 총무 대행	<p>총무 유고시 단기간에는 조직편제 서열대로 대행한다.</p> <p>1) 조직편제(기획행정국장, <u>교육출판국장, 전도법인국장</u>) 서열대로 대행한다.</p>	<p>총무 유고시 단기간에는 조직편제 서열대로 대행한다.</p> <p>1) 조직편제(기획행정국장, <u>교육전도국장, 출판법인국장</u>) 서열대로 대행한다.</p>	변경
보수규정 개정			
제2조 적용 범위	<p>총회본부 직원 및 상비부 직원에 적용한다.</p>	<p>총회본부 직원 및 상비부 직원에 적용한다. 단, 총무는 연봉제로 하되 그 액수는 국장 만호봉의 120%이하 선에서 임원회가 정한다.</p>	변경
제6조 수당의 종류	<p>1.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별첨2)</p>	<p>1.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별첨2)</p> <p>9) 보상휴가수당</p>	신설

구분	종 전	개 정	비고	
제11조 시간외 및 야간 수당	직원이 명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할 경우는 과장 이하 직원에 계만 해당된다.(별첨 3)	직원이 명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와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하되 연간 한도는 직원/120H 주임/100H 대리/92H 과장/80H 차장/64H 부장/48H 으로 한다.	변경	
제13조 보상 휴가 수당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시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해 실시하되, 연차 휴가 전체일수 중 1/3에 해당하는 미사용일수는 연차수당으로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단,총무는 보상휴가수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경	
호봉표 수정				
구 분	종 전	변 경	비 고	
별첨1	직급/호봉 기본급표	(총무삭제)	연봉제	
별첨2	과장,대리 직책수당	200,000	250,000	변경
	직원,주임 교통비	50,000	100,000	변경
	면허수당	-	100,000	신설(방화관리사,가스기능사,보일러산업기사 등)

마. 문서접수 시행지침 제정

총회본부 문서접수 시행지침	
<p>1. 총회본부에서는 노회 경유(혹은 부진)된 문건을 가접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① 교회 치리권(행정, 권징)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기 때문이다(행15:6, 정치 제8장 제1조)</p> <p>② 본 교단 헌법은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곧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 제8장 제2조 1항, 동 제10장 제6조 2항 및 11항, 동 제12장 제4조, 헌법적 규칙 제1조, 동 제3조1항)</p> <p>③ 현재 총회로 올라오는 모든 공문서는 통상적으로 당회-시찰회-노회의 경유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관습법도 법이다)</p> <p>④ 장로회 헌법은 개인의 법적 권리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치리회가 일방적으로 개인의 직접 청구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경유와 관련한 부진지가 첨부되어 있을 시는 노회로 사실을 확인하여 접수한다.(정치 총론 5, 장로회정치, 동 제1장 제1조, 동 제10장 제6조 10항과 11항, 헌법적 규칙 제3조 1항)</p> <p>⑤ 총회 문서 접수 매뉴얼</p> <p>1) 총회 전산에 등록된 노회 문서 접수 원칙</p> <p>2) 양분된 노회 문서 접수 기준</p> <p>a) 홈페이지에 등재 여부 확인 후 접수</p> <p>b) 노회 회의록 첨부</p>	



- c) 노회 직인 분실 이유로 새 직인을 사용 불가
 - d) 총회 헌법에 의거 21당회 되지 않은 노회 문서 접수 불가
 - 3) 재판 소송 및 분쟁 중에 있는 노회와 교회의 소속·재직 증명 등 발급 보류
<제97회기 - 제98회기 총회 임원회 결의>
 - 4) 총회직인만 날인하여 발급
 - 5) 총회가 발급하는 문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및 중립을 원칙으로 신중히 발급
2. 노회가 답변이 어려워 문의나 청원을 총회에 정식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이 제출하는 문의와 청원은 총회가 직접 받아 다루지 않는다. 개인 서류는 순서대로 먼저 하회의 답변을 먼저 얻도록 해당 치리회로 돌려보낸다.
- ① 각 치리회는 관할과 범위를 정할 것이요,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서대로 상회의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정치 제8장 제2조 1항)
 - ②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 상소 건 등은 접수하여 상회로 보낸다.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 ③ 총회는 …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 (정치 제12장 제4조)
3. 노회의 경유가 없거나 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문서 제출자에게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총무의 결재를 득해 반려하며, 서기에게 보고한다.
4. 상기 요건이 충족된 문건은 ‘가 접수’ 처리하여 총무 결재 후 총회 서기에게 이첩한다.
5. 총회 서기는 ‘가 접수’ 문건을 검토한 후 문서 접수 여부를 판단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총회 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6. 총회 임원회 결의나 총회 서기의 처리에 따라 총회본부에서는 행정처리 한다.
7. 총회 직인 관련 원칙 : 총회장 서기 직인 보관 전용 소형 금고 마련
직인 사용 열람 대장 비치
- 2018.9.13. 총회임원회에서 기획행정국 내부 지침으로 시행기로 결의하다.
2018.10.18. 산하기관장,상비부장 워크샵 시 1항 “임시접수”를 “가접수”로 개정하다.

아. 증명발급 및 문서발송 시행지침 제정

- 총회본부 증명발급 및 문서발송 시행지침**
1. 각종 증명발급 관련
- 1)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총회본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류는 본래 노회의 권한과 업무에 속한 것인데 총회본부가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회의 위임(공문) 및 확인 안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노회는 그 관할 하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회자와 미조직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서 보살피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기 때문이다.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1조와 제6조 1,3,5,9항 / 헌법적규칙 제1조 / 권징조례 제19조와 제107조~제111조)
 - ② 따라서 교회와 목사에 관한 일체 서류는 노회의 확인에 의해 발급된다.
 - ③ 증명발급은 창구발급(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서 작성)과 인터넷증명발급(본인이 직접

출력 혹은 신청)으로 구분되며, 인터넷증명발급의 경우는 노회위임, 세례교인헌금 완납, 교회 통계 제출 3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가능하다.

- ④ GAIS에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되며, 노회 위임, 미 위임 모두 노회확인을 통하여 정보를 변경한 후 발급한다. (노회행정업무 담당자 확인)
- ⑤ 재판중인 교회(목회자), 분쟁중인 노회와 교회관련 증명은 내부결재를 통해 별도의 확인과정을 거치며, 필요에 따라서는 총회 임원회의 결재를 득한 후에 발급한다.
- ⑥ 모든 발급서류는 용도를 기입해야 하며, 기입된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서류 하단에 기재됨).
- ⑦ 증명발급 발행인은 총회장이다. 단, 법인설립허가증 상 대표자와 일치하여야 하므로 유지재단에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체한 이후부터 적용된다.
- ⑧ 산하기관 등 기관 관련 증명 발급은 공문에 의한다.
- ⑨ 노회의 증명서류는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자증명 발급은 봄 정기노회 후 노회상황보고서 접수기점 2주일 이후부터 발급토록 한다.
- ⑩ 증명서 발송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방문자 직접 수령 - 방문 신청 시
 - 나. 빠른 등기우편 발송 - 전화신청 및 인터넷 신청 시 반드시 본인(교회서류는 담임목사)에게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요청이 있을 시 기타 수령지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인(담임목사)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 다. 팩스 발송
 - 라. 파일 발송 불가
 - 마. 해외 발송 불가(국내 거주 지인에게만 발송)
- ⑪ 민원서류의 종류 및 내부 발급지침(현재 시행 중임)은 별첨 1에 따른다.

2. 각종 문서발송 관련

- 1) 총회임원회, 상비부 및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발송되는 모든 공문은 해당 부서(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안하여 내부 결재를 마친 후 시행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부서장 또는 서기의 확인 후 발송한다. 단, 특별한 사안을 제외한 회의소집, 참석(출석)요청, 기타 협조요청 등의 통상적인 공문들은 현행대로 총회총무 전결로 시행한다.
- 2) 총회규칙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9조(상비부) 3항(각 부원의 임무) 22목에 따라 상비부는 총회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총회본부와 본부직원들은 상비부를 적극적으로 보조 및 지원하되 상비부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상비부가 지도록 한다. 단, 총회규칙 제3장(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12조(총무) 1항(임무와 권한) 1목에 의거, 총회총무는 헌법과 규칙과 총회결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할 수 있고, 총회장에게 바로 보고하여 조정 후 시행토록 한다.
- 3) 민형사상의 사회소송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 답변서, 증빙서류는 총회가 원고 혹은 피고(당사자 위임 건 포함)가 되어 진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중립과 객관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개입(발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서류의 반려, 각하, 기각 처리는 총회서기 및 각 상비부(위원회)의 서기 결재(혹은 결의)로 시행한다. 여기서 반려(返戻)란 절차 및 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각하(却下)란 제출된 문서의 요건이 결여되어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요, 기각(棄却)이란 제출된 문서가 요건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문제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원 처분을 시인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5) 발송 문서의 통제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발송할 공문은 결재를 받은 후, 기획행정국 문서담당자에게 기안과 시행문을 제출하면 문서담당자가 발송대장에 기입하고 문서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 ② 총회직인은 기획행정국 내 별도 금고에 보관하고, 전항의 발송과 관련하여 직인 날인이 필요할 시는 직인사용 기록대장에 기록 후 기획행정국 문서담당자가 금고에서 분출하여 날인토록 한다.
- ③ 기획행정국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서는 등기 속달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내용증명 등으로 처리한다.
- ④ 매일 서류발송 마감은 통상 오후 3:30까지로 한다(당일 등기 발송을 위한 마감).

2018년 11월 8일 총회임원회 결의로 제정하다.

[별첨] 현행 민원서류의 종류 및 내부 발급 매뉴얼

서류명	서류성격	발급 형태	구비서류	유의사항
소속증명서	교회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창구 인터넷	소속증명서 (노회)	교회이름, 주소, 담임목사 변경은 노회서류를 통해서만 변경 가능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1,3,5항 / 노회업무담당자 처리) ※ 재판 관련 교회서류는 재판국 등과 연계하여 결재 후 진행
재직증명서	목회자가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	창구 인터넷	재직증명서 (노회)	① GAIS 회원정보에 재직기간 입력 필 ② 노회위임일 경우 본인에게 재직기간 확인 ③ 미재직시 노회확인 후 재직기간표기 없이 노회 소속 표기로 발급 ④ 원로목사-정년 이전에만 발급가능. 재직기간은 원로목사 추대일부터. 직위에 “원로목사”로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발급, 정년 이후에는 ⑤적용 ⑤ 은퇴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발급 불가 * 은퇴목사는 은퇴목사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로만 발급 가능 ⑥ 성직자증명서 요청 시 재직증명서 발급하면 됨 ⑦ 103회 총회에서 헌법개정 공포됨에 따라 군종목사와 군선교사의 재직증명의 경우도 노회의 확인 후 발행
직인증명서	교회 사용직인에 대한 확인	창구 인터넷	노회확인필	GAIS 등록된 경우 인터넷증명 가능

서류명	서류성격	발급 형태	구비서류	유의사항
대표자증명서	교회 대표자 확인	창구 인터넷	대표자증명서 (노회)	① 담임목사만 가능(임시당회장 포함) ② 원로목사, 은퇴목사, 강도사, 전도사는 발급불가 ※ 재판 관련 교회서류는 재판국과 연계하여 필히 결재 후 진행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00조)
안수증명서	목회자로 안수 받았음을 확인	창구 인터넷	안수증명서 (노회)	① 노회확인서에 의해 GAIS 입력 후 발급 ② 편목은 발급 불가(강도사고시 후 정회원 되어도 발급할 수 없음. 본 교단에서 안수받은 경우만 가능)
경력증명서		창구 인터넷	경력증명서 (노회)	① 노회확인서에 의해 GAIS 입력 후 발급 ② 목사안수 이후 본 교단에서의 경력만 확인 ③ 소속노회 이외의 경력은 노회 확인 후 수기 발급
급여증명서		창구 인터넷	급여증명서 (노회)	① 노회확인서에 의해 GAIS 입력 후 발급
법인설립 허가서	총회가 법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속증명서에 첨부되어 사용됨	창구 인터넷		① 매년 총회장 교체 이후 변경(유지재단) ② 유지재단으로부터 수령하여 인쇄 ③ 전산실 전달 - 인터넷 증명 변경 ④ 인쇄 시 하단에 문구 삽입 (법률행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신분증		창구	사진 안수증명서	① 세례교인헌금 완납 경우 발행 ② 부교역자, 전도목사, 무임목사, 원로목사, 은퇴목사 불가 ③ 편목 불가 ④ 유효기간 2년
차량사용 목적증명	차량을 교회용으로 사용함을 확인 - 목사님 개인 자산으로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창구 인터넷		차량사용 목적은 서식에 포함되어 있음
사실증명서	a. 교회 및 담임목사 정보변동사항	창구	-노회 사실확인서	- 노회확인 필



서류명	서류성격	발급 형태	구비서류	유의사항
	(주소, 명칭 등)에 대한 사실확인 b. 강도사고시합 격 증명 c. 기 타		-고시부담당자 확인 -노회사실확인서	- 강도사합격증 재발행 불가, 사실 증명서로 발급함: 합격년도 및 생년월일, 시험당시 노회확인, 고시부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기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사항 중 일반서류로 발급할 수 없는 부분은 노회확인을 통하여 사실확인서로 발급할 수 있음
교인현황증명	교인수 확인 (유치부~장년부 합계)	창구 인터넷	교세통계표	① 최종 보고된 교세통계에 의해 발급 ② 미보고된 경우 노회확인(날인)된 교세통계표를 받아 전산실에 전달, 입력 후 발급
성통, 주통 수료증명서	성경통신대학, 주교교사통신대학 수료 확인 (교육출판국)	창구	담당자 확인서류	서류대금 영수증 별도 발행
산하기관 증명서	산하기관의 총회소속여부, 사용직인, 대표자 등을 확인	창구	발급요청 공문	① 해당 기관 요청공문에 의하여 발급한다(노회, 산하기관) ② 지방신학교에서 요청할 경우 결재 후 발급(산하기관이 아님)
연말정산서류	교인들에게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증명서에 첨부되는 서류 - 소속증명서, - 법인설립허가서 - 기부금확인서 양식 (국세청양식)	창구 인터넷		① 매년 국세청 연말정산 정책과 기부금확인서 양식을 확인하여 총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② 세례교인헌금 납부 및 기타 총회 정책, 교회분쟁상황 등과 관계없이 발급
총회장추천서	학교입학이나 단체에 총회장 추천이 필요한 경우	창구	노회장 추천서	추천서 발급
외국인 초청서류	교회에서 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을 초청할 시	창구	① 노 회 초 청 사유서(소속노회)	①~⑤까지는 총회 양식으로 작성 ② 서류 갖춰지면 결재 ③ 결재 후 발급서류

서류명	서류성격	발급 형태	구비서류	유의사항
	출입국사무소에 교단명으로 된 초청장을 발급함으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교회 초청 사유서-초청대상, 체류기간, 지역내용, 주소 및 현지 연락처, 재정정보조 등 명시 ③ 신원보증서 ④ 체제비 조달 확인서 ⑤ 사증발급신청 신청서 (출입국관리소용) ⑥ 당회결의서 ⑦ 초청대상자 이력서 1부(한글) ⑧ 여권사본 1부 ⑨ 총회세례교인헌금 완납(2회기) 교회 및 조직교회-전체교인 300명 이상교회(교세통계보고서근거) ⑩ 초청교회 후보 1부 ⑪ 위임장 	<p>: 초청장, 위임장, 사증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설립허가증사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외국인 초청대장에 기재 관리 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해 당회와 노회가 져야 함
직원경력증명서	총회본부 직원의 경력증명(전, 현직)	창구		인사담당자 확인 후 발급



4. 유안건 보고

아래와 같이 제103회 총회 결의사항을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하였기에 보고하오니 유안건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명 : 정치 1,2부로 분리 개편의 건

1) 제103회 총회결의사항

대경노회장 김장교씨가 현의한 총회 정치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현의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되 규칙부로 보내 규칙을 개정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한 뒤 총회홈페이지에 공포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규칙 개정 사항이므로 거수로 확인하니 3분의 2 이상 동의함으로 가결하다.

2) 처리방안

규칙부로 보내 총회기간 중 규칙 개정안을 본회에 상정하여 개정하고 제105회기부터 적용

청 원 서

수신 : 총회장
 참조 : 서기
 제목 : 총회를 상대로 한 사회소송 대응 방안의 건

총회임원과 직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사회법 소송이 계속 증가하는데 따라 총회의 위상 하락과 대외신인도 저하 및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 및 현 사법 추세에 따라 총회상대 사회소송 대응방안(매뉴얼)을 총회 결의로 마련해 둘 필요 있어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아 래 -

1.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가처분 포함)의 형태
 - 가. 총회결의사항에 대한 소송
 - 나. 총회 선출직 선거와 관련한 소송
 - 다. 전현직 총회임원 직위, 직무에 대한 소송
 - 라.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소송
 - 마. 노회, 교회, 개인 간 분쟁으로 인한 행정 처리와 관련하여 총회, (전현직)총회임원, 직원에 대한 소송
 - 바. 총회직원의 직무에 대한 소송
2. 대응방법
 - 가. 1의 가,나,다항 : 총회임원회 결의로 총회가 대응(소송비용-총회부담)
 - 나. 1의 라,마항 : 소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대응토록 위임(소송비용-당사자 부담, 단 소의 이익 당사자가 없는 경우 총회가 부담)
 - 다. 1의 바항 : 총회총무가 임원회에 보고하여 총회가 대응(소송비용-총회부담)
3. 소송제기자에 대한 조치
 - 가. 행정조치
 - ① 소송제기자 소속 노회에 총회 대응 절차를 통보하고 지도토록 지시
 - ② 소송 접수일로부터 각종 청원, 질의 등 제출서류 접수 정지
 - ③ 소송 접수일로부터 각종 증명 발급 중지
 - 나. 권징조례에 따른 징계 조치
 - ① 목사의 경우 :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노회의 공직과 총회총대권 2년간 정지
 - ② 장로의 경우 : 소송접수일로부터 소속당회에서의 직무와 노회총대권 2년간 정지
 - ③ 처리기한 : 통보일로부터 45일 이내
 - ④ 하회가 불이행시 : 노회의 총회총대권 정지



다. 치리회의 재판(상소, 소원) 계류 중인 건에 대하여 사회소송 제기할 경우

해당 재판국에 사실을 통보하여 권징조례 제76조에 의거 처리토록 함

※ 권징조례 제76조 본 치리회나 혹 그 재판국에서 재판하는 중 판결 언도 전에 피고 혹 원고가 상회원에게나 일반 민중에게 대하여 변론서나 요령서를 출간 혹 복사하거나 기타수단으로 직접 혹 간접으로 선전하면 치리회를 모욕하는 일이니 그 행동을 치리하고 그 상소를 기각할 수 있다.

4. 사회법정 판결에 따른 조치

가. 소송제기자 패소 시 (무혐의판정 포함)

-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함
- 총대권정지 외 추가적 징계(권징조례 35조)
 - 총회임원 중 2인을 기소위원으로 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
 -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토록 함
 - 해당 치리회에서 기한 내 불이행 시 상회에서 직접 처결토록 함

나. 소송제기자 승소 시

- 총대권 즉시 회복(각심 판결일로부터 효력 발생 및 정지)
- 해당 재판국 판결 및 결의사항 효력 즉시 정지(판결일로부터)
- 절차에 따른 해별 및 결의사항 변경

2019년 9월

총 회 임 원 회
 총회장 이 승 희
 서 기 김 종 혁